

건설근로자 고용·복지서비스 길라잡이

2017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제도와
다양한 고용복지지원 서비스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필요하신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찾아보시거나
아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콜센터 1666-1122
- 산재보험, 임금체불 등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 보건복지 콜센터 129
- 국민연금 콜센터 1355



1 일자리가 없거나 기능훈련이 필요할 때

- 1.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6
- 2. 직업훈련을 받고 싶은데 어떤 제도가 있나요? 7

2 4대보험 혜택을 알고 싶을 때

- 3. 건설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되나요? 12
- 4.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13
 - ※ 실업급여 수령, 교육훈련비 지원
- 5. 실업급여는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4
- 6.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
 - ※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보험료 일부를 지원

3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을 때

- 7. 건설현장에서 다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2
 - ※ 요양급여, 장애급여, 직업재활급여 등
- 8. 산재보상금 외 산재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27
 - ※ 산재근로자 장학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케어센터, 훈련수당 지급 등



4 일을 한 후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을 때

- 9.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2



5 자녀학자금 등 생활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10.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이 있나요? 40
 ※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금,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건설근로자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단체보험 가입, 결혼·출산 보조금, 힐링 캠프 등
11. 건설근로자를 위한 정부지원제도가 있나요? 49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근로·자녀장려금, 주거안정자금 지원,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 미소금융, 바뀔드림론, 희망키움통장 등

6 건설업 퇴직 후 퇴직공제금을 받고 싶을 때

12. 퇴직공제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64
13. 신용불량자도 퇴직공제금을 직접 받을 수 있나요? 70

7 기타 유용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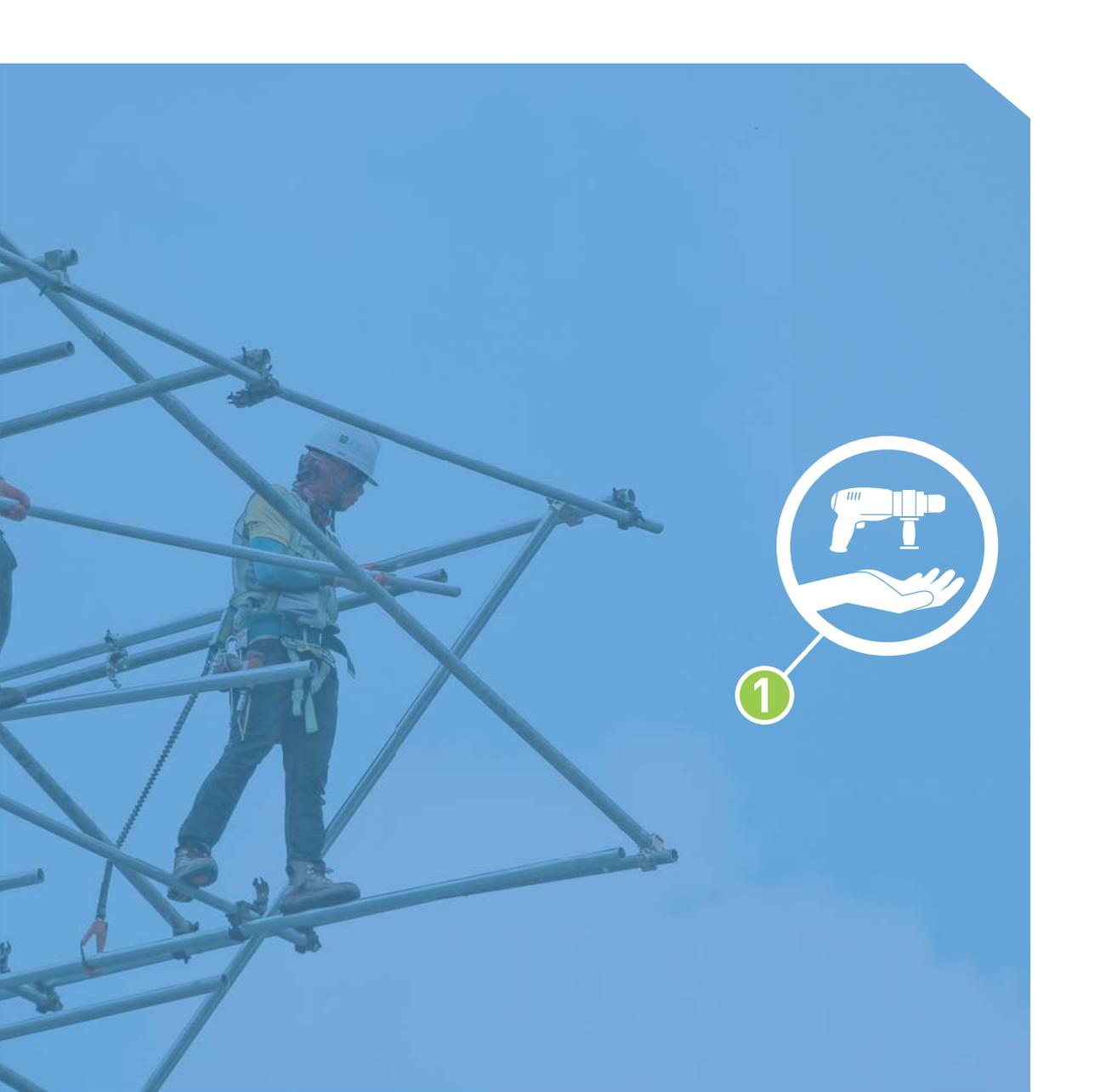
14.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72
15. 경력증명을 받을 수 있나요? 82
16. 직업소개 수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84
17. 건설일용근로자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85



- [별첨 1] 건설근로자공제회 제휴 서비스 88
- [별첨 2] 참여 훈련기관 현황 91
- [별첨 3]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센터 현황 94
- [별첨 4] 건설근로자공제회 연락처 95

건설근로자 종합정보 문의 안내

문의 내용		문의처	전화번호	페이지	
취업 지원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1666-1829	6	
직업 훈련	기능향상 훈련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7	
	내일배움카드제(훈련비 지원)	고용노동부	1350	9	
4대 사회 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1355	12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2	
	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노동부	1350	13,14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2,27	
	보험료 납입 지원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0	
임금 체불	임금체불 발생 시 대응방법	고용노동부	1350	32	
	체당금 신청	고용노동부	1350	33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고용노동부	1350	36	
복지 서비스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원 혜택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40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49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1544-9944	51	
	주거안정자금 지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080-800-9001 1688-8114	54	
	경유 차량 조기 폐차 시 지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577-7121	57	
	저소득층 소액금융지원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57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58	
	긴급복지지원제도	보건복지콜센터	129	58	
	미소금융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60	
	바꿔드림론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60	
	새희망홀씨	한국이지론	1644-1110	61	
	희망키움통장	보건복지콜센터	129	61	
	퇴직 공제금	퇴직공제금 신청 등 제도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64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발급	우리은행	1599-5000	70
			하나은행	1599-1111	
건설 안전	기초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공단	1644-4544	72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안전보건공단	1644-4544	73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공단	1644-4544	75	
	경력증명서 발급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82	
	소득세 안내	국세청	126	85	



일자리가 없거나 기능훈련이 필요할 때

1.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2. 직업훈련을 받고 싶은 데 어떤 제도가 있나요?



일 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건설현장 일자리가 필요한 건설근로자를 위해 소개료 없이 무료로 취업알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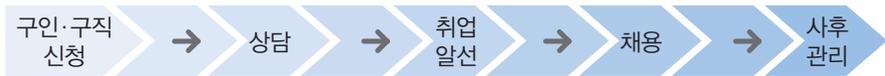
- 건설현장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와 건설근로자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무료로 취업알선을 하고 있으며, 소개비는 받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 건설 직종으로 일 자리를 구하는 분
- 건설근로자 채용을 희망하는 건설업체(현장)

신청방법

- 전국 대표번호 1666-1829 문의



전국 취업지원센터 현황

(단위: 개소, '17.3.31 기준)

구분	계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개소	17	3	4	1	1	1	1	1	1	1	1	1	1

※ 세부현황 : (별첨3)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현황' 참고



문의처

-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 1666-1829)**
 - 인터넷 : 건설일드림넷 www.cid.or.kr 접속
 - 모바일 앱 :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건설일드림넷'을 검색하세요



직업훈련을 받고 싶은데 어떤 제도가 있나요?

건설기능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를 위해 기능향상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훈련

• 건설근로자가 일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기능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자로서 고용보험 근로내역이 신고 된 자,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있는 자, 건설공사현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 직업 안정기관에 건설 직종으로 구직 신청한 자

※ 훈련 제외대상

- 만 15세 미만 및 만 65세 이상인 자
- 건설업 외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중인 자
- 실업자 훈련 등 다른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자
- 부정수급 등으로 수강제한 처분 중인 자
- 기타 개인의 특성상 건설현장 근로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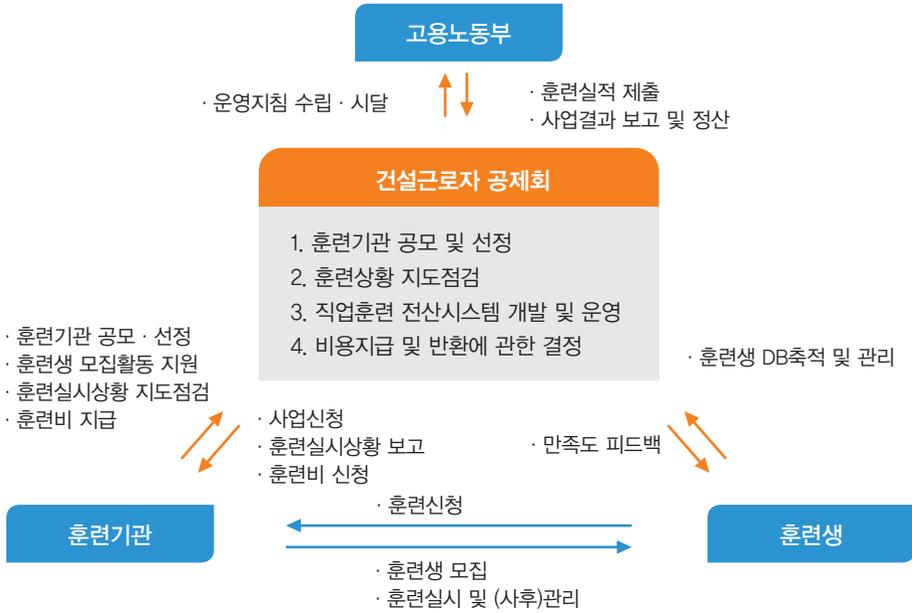
훈련직종

- 기본과정(15개 직종) : 조적, 미장, 타일, 방수, 배관, 도장, 건축목공(일반, 형틀, 한옥), 철근, 용접(일반, 플랜트), 비계공, 석공, 콘크리트공, 조적+타일, 배관+일반용접, 건축(형틀)+철근
 - 심화과정(4개 직종) : 건축목공(일반, 형틀), 미장, 타일, 조적
- ※ 훈련기관 및 과정은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세부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드림넷” 참고(www.cid.or.kr)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 일드림넷〉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사업 추진체계〉





훈련편성

- 주간 : 1일 6시간 20일(120시간)
- 야간 : 1일 3시간 40일(120시간)

지원내용

- 훈련비 : 무료
- 훈련장려금(교통비, 식비) 지원
- 지원금액(1일당) : 주간과정 16,000원, 야간과정 10,000원
- 지원기준 : 1일 주간과정 5시간, 야간과정 2시간30분 이상 이수

훈련기관 및 과정 안내 : (별첨2) '참여 훈련기관 현황' 참조



내일배움카드제(고용부 훈련비 지원 사업)

- 내일배움카드제는 구직자에게 훈련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여 직무능력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이직 예정의 근로자(180일 이내), 무급 휴직·휴업자, 45세 이상 대규모기업 근로자, 3년간 사업주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 육아휴직자 등
- 지원내용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과정 수강 시 1인당 1년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지원(자비 부담분을 제외한 훈련비를 훈련기관에 지급)

실업자

- 지원과정
 -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 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 지원대상
 -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실업자 등에게 취업희망분야에 따른 훈련 직종을 협의·선정 후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 지원내용
 - 훈련비 : 1인당 200만원까지 실제 훈련비의 20%~95% 지원
 - ※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참여자는 훈련비의 50%~95%, 1유형 참여자는 300만원 범위 내 훈련비 전액 지원 또는 90% 지원
 - 훈련장려금 : 단위기간(1개월)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 지급
- 지원절차



-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



문의처

- **기능향상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 (☎ 1666-1122)**
 - 건설일드림넷 (www.cid.or.kr) 접속 → 훈련정보
- **내일배움카드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접속 → 내일배움카드제



4대보험 혜택을 알고 싶을 때

3. 건설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되나요?
4.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5. 실업급여는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6.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설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되나요?

일정 기간 이상 건설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이 되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도록 계약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업장 가입 대상입니다.
-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 대상입니다.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 일용근로자는 매월 변동된 소득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
 - 자격취득 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고, 가입기간 중에는 사업장에서 신고 된 실제소득 월액에 따라 적용
-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17.4월 현재 본인 부담비율)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4.5%, 건강보험료율은 3.06%(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6.55%이고 가입자 부담률은 50%)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 1355)
 - 인터넷 www.nps.or.kr 접속 → 내연금 알아보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인터넷 www.nhis.or.kr 접속 → 제도소개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일 자리를 잃거나 건설업에서 퇴직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정부가 승인한 훈련기관에서 무료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절기 등 일감이 없거나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에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정부가 승인한 훈련기관에서 훈련비 지원을 받으며 교육훈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조건 및 지급액

- 실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한 날이 총 180일 이상이고, 신청일 직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
-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이며 연령,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까지 지급

※ 내일배움카드제 활용

- 정부가 승인한 교육훈련을 수강할 경우 연간 200만원, 5년간 총 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 지원 가능(자비부담분 제외하고 훈련기관에 제공)
- 훈련수강을 희망하는 경우는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업 및 훈련 상담 후 내일배움카드 신청 또는 HRD-Net에서 신청 가능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인터넷 minwon.moel.go.kr 접속 → 자주하는 질문



실업급여는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일자리가 없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요건이 충족된 경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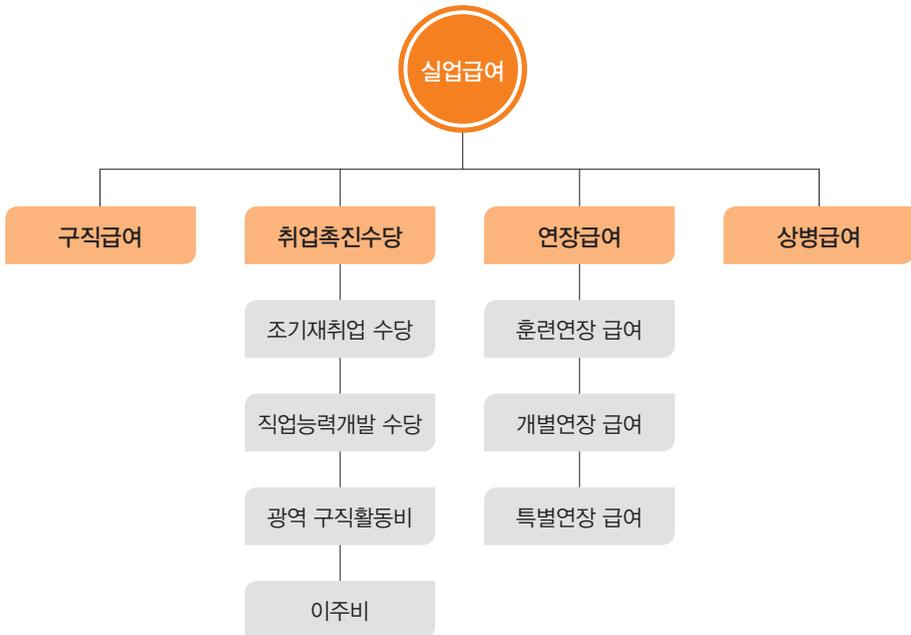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된 건설일용근로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근로일수)을 모두 더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함
-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함
-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자발적 이직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④ (일용)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 ⑤ (일용)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 기간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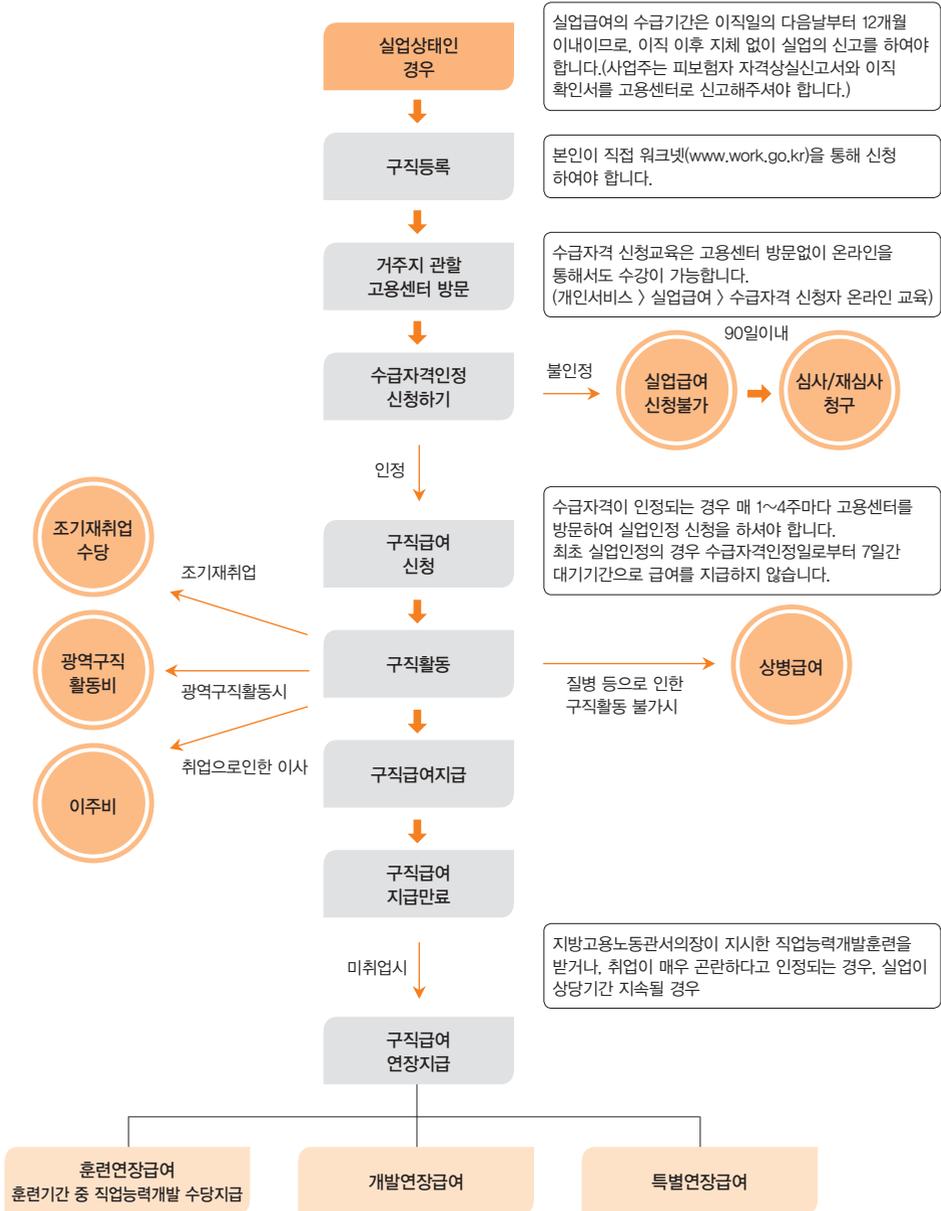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해 안내받은 후 귀가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통지



실업급여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아래 순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됨

* 자료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실업신고, 실업인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신고

-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포함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 받습니다.

실업인정

-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건설일용근로자는 실업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여 1주부터 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건설일용근로자는 이직일 현재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아래의 급여일수를 한도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1일 상한 수령액은 50,000원('17.4.1 이후 이직의 경우)
하한 수령액은 최저임금액('17년 6,470원)의 90%

〈구직급여 수령 가능일〉

구 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현재 연령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취업촉진수당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건설일용근로자가 조기재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및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하기 위해 이주하는 경우에는 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조기재취업 수당

-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취업촉진 수당을 말합니다.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지급합니다.
- 지급액 :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

직업능력개발 수당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취업촉진 수당을 말합니다.
- 지급액 : 훈련기간 중의 교통비 식대 등(1일 5,800원)

광역구직활동비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로부터 50km가 넘는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지급액 : 숙박료 -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 운임 - 실비(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 계산)

이주비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될 수 있는 취업촉진 수당을 말합니다.
- 지급액 : 5톤 이하의 실비(5톤까지는 실비+5톤 초과 7.5톤까지 실비의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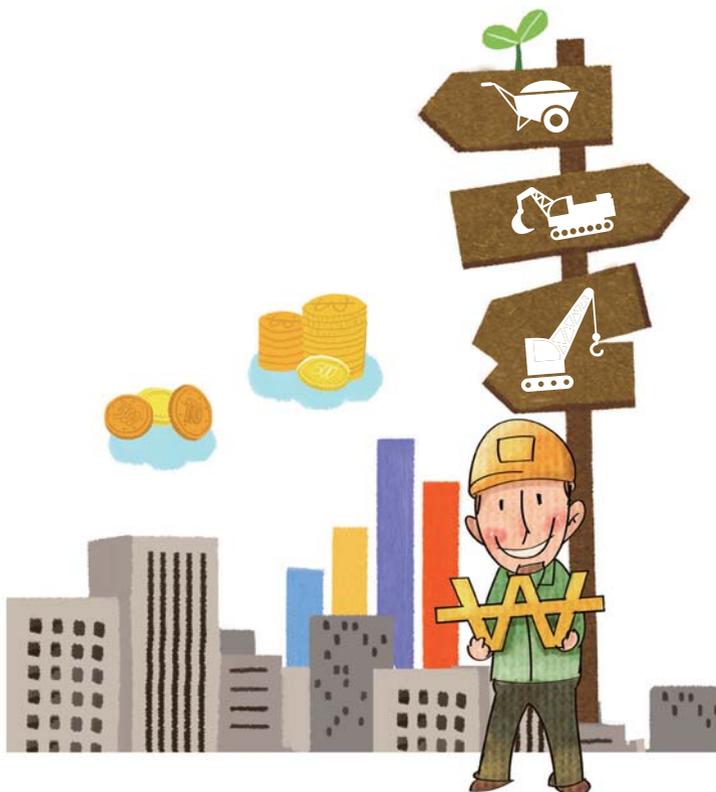
신용불량자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의 본인 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므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는 지급이 되더라도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 우리은행 또는 농협은행에서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액이 압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인터넷 minwon.moel.go.kr 접속 → 자주하는 질문
 - ※ 자료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건설일용근로자(2017, 법제처)
일하는 사람들의 든든한 희망 고용보험 안내(2017, 고용노동부)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 건설현장의 공사금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신규 가입근로자

-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단절되고, 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근로자의 경우 최대 60%의 보험료 지원

기존 가입근로자

- 신규 가입근로자 이외의 근로자의 경우 최대 40%의 보험료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 사항 입력
- 서면 : 제출서류 작성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우편, 방문, 팩스 가능)
- 제출서류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장 확인신청서 서면 제출 또는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직접 신청이 어려울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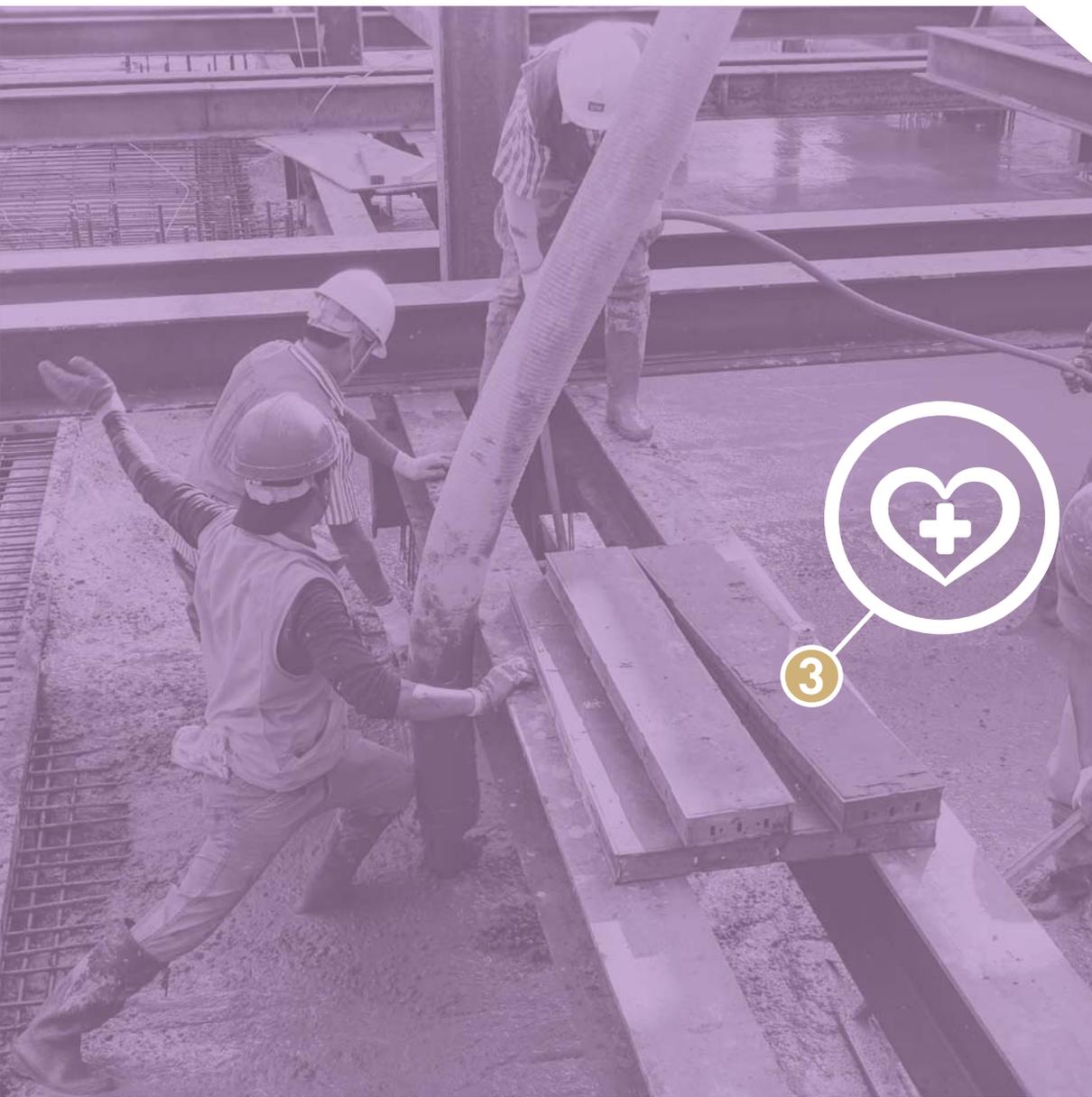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고용노동부고용센터(☎ 1350)으로 문의하면, 찾아가는 가입서비스 요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 1355)
- 인터넷 insurancesupport.or.kr 접속 →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하기

※ 자료출처 :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insurancesupport.or.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을 때

7. 건설현장에서 다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8. 산재보상금 외 산재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건설현장에서 다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이란?

-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치료비, 요양급여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건설공사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 건설업 등의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건설업 당연일괄 적용)
-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개인 직영공사 등)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 100㎡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개인 직영공사 등) 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기타공사(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이외의 공사)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근로자라면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연령, 국적, 학생, 정규직 여부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다른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처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산재보상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 대한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 * 최고보상기준: 1일 191,793원의 70%, 최저임금(1일 48,240원) 미달 시 최저임금 지급
오랜 치료에 따른 상해보상연금	요양개시 이후 2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폐질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산재치료 종결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1~14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치료 후 간호비용 간병급여	산재치료 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 상시간병급여: 41,170원(1일), 수시간병급여: 27,450원(1일)
직업복귀를 위한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1급~12급)를 받은 근로자에게는 직업훈련비용·훈련수당을, 직장에 복귀 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직장 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 지급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사망추정 시 유족에게 지급
장제를 위한 장의비	산업재해로 사망 시 장제를 지낸 유족 또는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

※ 자료출처 : 2017 고용노동정책(2017,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업무상 재해는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으로 문의하면 구체적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가 나면, 우선적으로 인적사항, 재해경위, 목격자 등을 기재한 요양급여신청서 3부를 작성하여 사업주 날인과 의사 소견을 받은 후 1부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1부는 병원에, 1부는 사업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 만약 직접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치료 받는 병원에 제출을 위임하시면 병원에서 접수도 해드립니다. 만약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도, 날인 거부 사실을 기재하고 접수하면 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유의사항〉

- ★ 사고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
응급치료 및 기타 비용지출이 발생하면 영수증을 잘 보관!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서류가 접수되면, 업무 중에 발생한 재해인지 여부를 직접 조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의 경우는 7일 이내 처리가 완료되나 질병의 경우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므로 좀 더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은 사업장에 근로자가 1명 이상이 있을 경우, 당연히 적용되는 의무보험입니다.



사업주가 산재신청에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주가 산재신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요양급여 신청서와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이유를 함께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으나 불승인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심사청구제도 활용
 - 불승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산재심사실에 청구하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서도 불승인이 날 경우, 고용노동부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제기
 -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불승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퇴직하거나 회사가 없어진 경우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 회사를 퇴직하거나 다녔던 회사가 없어진 경우라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공단에 요양 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실 관계 등을 조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산재보험은 심하게 다치거나 아픈 경우만 해당되나요?

- 아주 심각한 사고나 질병이 아니어도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 가능합니다.
- 단, 4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산재인가요?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일하는 업무와 관련해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모두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은 맞으나, 그것이 개인적인 일탈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치료가 끝났는데 다시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 치료 후 사회에 복귀하였으나 치료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담은 추가상병소견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환자 본인의 기존 질환이나 처음 승인된 상병과 무관한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통장이 압류되어 보험급여 받기가 어려운데 방법이 없나요?

- 산재보험금 압류방지통장(희망지킴이 통장)을 KB국민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인터넷 www.kcomwel.or.kr 접속 → 산재보상서비스

※ 자료출처 : 2017 고용노동정책(2017, 고용노동부)
고용 · 산재보험 가입안내(201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산재보상금 외 산재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산업재해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해 장학금 지급,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다방면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산재근로자 장학사업

지원대상

- 산재장해인(1~7급), 상병보상연금수령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산재보험법에 의한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 질병 판정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지원내용

- 자녀의 고등학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급합니다.(연간지원총액 최고 한도액 5백만원)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www.kcomwel.or.kr)으로 신청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대상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애등급(1~9급) 판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1세대당 2,000만원까지 각 융자종류별 한도 이내에서 대출해 드립니다.

구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주택이전	차량구입	사업자금
융자액	1,000만원					1,500만원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www.kcomwel.or.kr)으로 신청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지원대상

- 경기케어센터 : 60세 이상 산재장해등급 제1~3급 결정자
- 태백케어센터 : 60세 이상 진폐장해인

지원내용

- 경기케어센터 : 산재장해인에게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태백케어센터 : 진폐장해인에게 주거에 필요한 시설 및 일상생활의 편의 등 전문적인 생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 경기케어센터(☎ 031-359-0515), 태백케어센터(☎ 033-580-5200)로 신청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지원대상

- 산재요양이 끝났으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재장해인 등

지원내용

-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한방진료 등 의학적 조치를 제공합니다.(42개의 상병 지원)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으로 신청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지원대상

-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

지원내용

- 직업훈련비용(최대 12개월 이내 6백만원) 또는 훈련수당(최대 1일당 최저임금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으로 신청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지원대상

- 다치기 전의 직장에 복귀를 희망하는 산재장해인(1~12급)
- 산재장해인(1~12급)을 직장에 복귀시켜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지원내용

- 근로자 : 직장복귀에 필요한 정보, 작업능력평가 및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 사업주 : 직장복귀지원금(월 30~60만원, 최대 12개월), 직장적응훈련비(월 45만원, 최대 3개월), 재활운동비(월 15만원, 최대 3개월)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으로 신청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지원대상

- 산재장해인 1~14급으로서 훈련 직종 또는 취득 자격증이나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자영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지원내용

-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전세점포를 지원합니다. (연리 2%, 최장 6년, 월세 200만원 이내)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으로 신청





산재근로자 사회심리 재활 지원

지원대상

- 산업재해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근로자

지원내용

- 산업재해로 인한 심리적 불안 및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재활멘토링, 재활스포츠, 취미활동반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으로 신청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인터넷 www.kcomwel.or.kr 접속 → 근로자복지서비스
- ※ 자료출처 :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2017,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일을 한 후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을 때

9.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란?

-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임금체불로 보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당사자 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건설현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
- 제출서류
 - 임금수령증, 급여통장사본, 근로내역서 등
 - ※ 진정서를 작성할 때는 건설회사명, 회사 주소지, 사업주 이름, 연락처, 주소지, 근로기간, 체불 임금액을 기록하여야 함
-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청의 지급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으로부터 벌금·실형 등 선고받아 집행됩니다.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지원을 제공합니다.
 - 임금체불 신고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을 방문하면 공단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단,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
- 다만, 현행 기준상 지원대상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입니다.



체당금 신청

- 기업의 도산(사실상 도산*, 재판상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합니다.

* 사실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청장이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인정한 경우

** 재판상 도산 : 법원이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한 경우

지급 요건

- 사업주 :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후에 도산한 경우
- 근로자 : 파산선고 등이나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지급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체당금 상한액〉

퇴직당시 연령 채당금 종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 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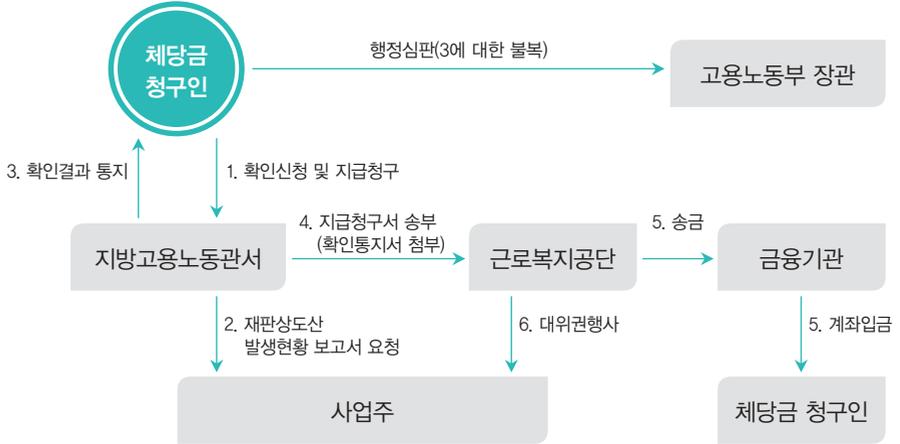
- 일반체당금 : 기업의 도산인정일(파산선고 등) 2년 이내에 일반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소액체당금 : 임금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등을 받은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법원의 판결문 또는 확정증명원 정본,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해 준 체불금품확인서 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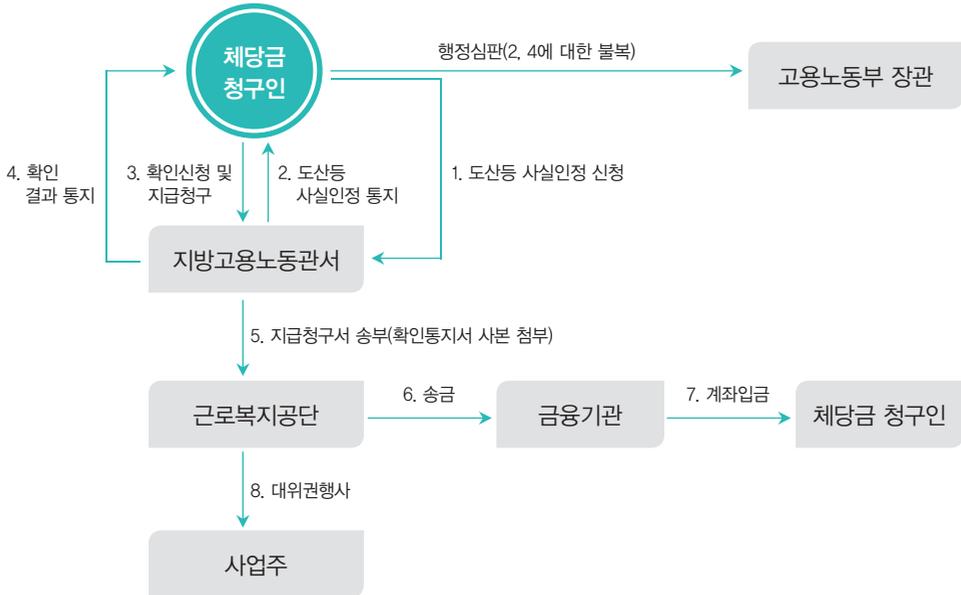
신청 절차

• 재판상 도산



※ 자료출처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 도산 등 사실인정



※ 자료출처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소액체당금제도〉

-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15.7.1 이후)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가 대신 지급
 - ※ 기존의 체당금제도가 도산기업에 한해 체불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했던 반면, 소액체당금 제도는 기업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소액체당금을 지급 (최대 3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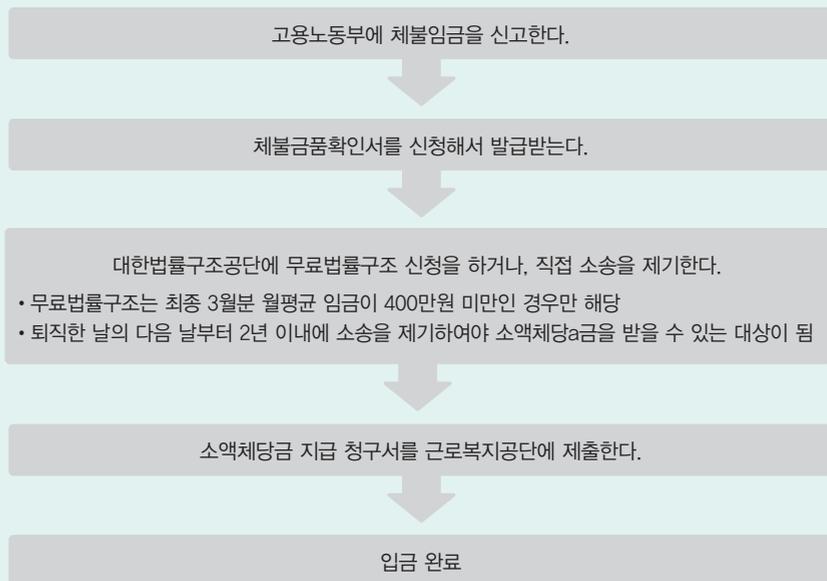
지급요건

- 사업주 : 퇴직일까지 회사가 6개월 이상 가동한 경우 (사업주가 무면허 하수급인 경우에는 직상의 건설업자도 회사로 봄)
- 근로자 :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15.12.31까지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해당)

지급액

-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

신청절차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고, 대부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보통 인부 노임단가의 5일분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를 대부해 드립니다.
※ 이자율 및 상환방법 : 연리 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으로 신청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인터넷 minwon.moel.go.kr 접속 → 자주하는 질문

※ 자료출처 : 체불임금리플렛(201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2017,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임금체불시 처리절차〉

체불시점

- 임금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당사자 해결

- 체불임금 산정→산정된 임금 지급요구
 - 체불임금액 산정자료 : 임금대장, 퇴직증명, 근로자명부 등
 - 지급요구 : 구두, 서면(내용증명 등)
 - ※ 지급 불이행시 임금채권은 민법상 절차에 따라 받아야 함

근로기준법상 처리절차

- ① 고용부(청)에 진정서, 고소장 제출(방문, 우편, 인터넷 등)
- ② 진정인, 피진정인 출석조사(1~2주소요) : 노무사에게 위임하면 대리출석조사 가능
- ③ 고용부(청) 지급지시(체불이 해소되면 진정서 등을 취하가능)
- ④ 지급지시 불응 시 근로감독관이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여부 결정
- ⑤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에서(판사) 벌금, 실형선고 등을 결정

민사소송절차(개요)

- 피고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인지필요) 제출→답변서(준비서면) 제출 및 쟁점정리(법원)→주장 및 증거, 증인신청→재판기일 지정 통지→판결→송달→집행
 - ※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 132) 서비스 활용
 - ※ 소송 당사자 간 쟁점이 없는 경우 민사조정제도나 지급명령제도 활용(비용절감)
- 보전절차(가압류, 가처분) : 변제받을 때까지 회사재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 채무명의 확보(정식재판, 소액심판, 지급명령, 공증 등)
- 강제집행절차(경매절차,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

임금의 시효

- 임금채권은 3년간(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지지급일 다음날부터 소멸시효 기산)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소멸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녀학자금 등 생활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10.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이 있나요?
11. 건설근로자를 위한 정부지원제도가 있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이 있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자녀 장학금 지원, 단체보험 가입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구 분		공제회 장학지원금	협성장학금
근로자	연 령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거주 지역	제한 없음 (기존 공제회 장학지원금, 협성장학금 선정자 제외)	제한 없음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008일 이상 (단, 직전년도 근로내역 100일 이상 적립자)	1,260일 이상 (단, 직전년도 근로내역 100일 이상 적립자)
자녀	지원 금액 및 인원 ('17년 기준)	- 100만원/1학기 - 220명	- 등록금 전액 및 50만원/1학기 - 11명
	학 교	4년제 이상 (전문대학 및 대학원 제외)	4년제 이상 (전문대학 및 대학원 제외)
	학 년	재학생 (신입생 제외)	신입생 및 2~3학년 재학생 (4학년 제외)
	학 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성 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 평점 3.0/(4.5), 2.8/(4.3) 이상 또는 백분위 80점 이상	-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평균 3등급 이내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 3.5/(4.5), 3.3/(4.3) 이상인 자

접수기간

- 협성장학금: 매년 12월~1월, 공제회 장학지원금: 매년 3월

신청서류

-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회원복지” 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신청방법

- 협성장학금: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로 등기우편 접수
- 장학지원금: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접수 및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각 지사·센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내용

- 비싼 대학 학자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대학생 자녀가 재학 중 마음 편히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대출이자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전년도 적립일수가 1일 이상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지원범위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

- 상반기 : 3~4월, 하반기 : 9~10월(예정)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복지팀 ☎ 02-519-2095



건설근로자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지원내용

- 분진, 소음 등 열악한 외부환경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여러 사유로 건강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무료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전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40세 이상의 건설근로자

검진항목

- (기본검진) 건강보험공단 1차 검진(기본검진)
- (선택검진) CT【특수장비검사】, 초음파검사, 위내시경 등 택 4
- ※ 기타 자세한 검진항목은 '공제회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신청기간

- '17. 9월말 까지 상시【'17.11월 말까지 건강검진 수검 완료】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복지팀(☎ 02-519-2095)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지원내용

- 직업특성상 위험직군으로 분류되어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단체보험을 대신 가입해 드리고, 상해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매년 초(1월 중) 가입신청을 통해 선정된 근로자 등 총 6,000명 선정('17년 기준)

보장내용

- 상해·질병사망, 상해후유장애, 암진단비, 암수술급여, 암입원급여,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골절 진단 등 15개 항목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복지팀(☎ 02-519-2093)



결혼·출산 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 건설근로자가 결혼·출산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년(504일) 이상이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근로내역이 1년 이내 신고·적립된 피공제자 중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혼인신고일 기준) 및 출산(출생신고일 기준)한 경우

지원금액

- 결혼보조금 : 30만원/1건(최초 1회에 한함)
- 출산보조금 : (첫째) 10만원/1건, (둘째) 20만원/1건, (셋째 이상) 30만원/1건

신청서류

- 결혼·출산 보조금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결혼보조금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 출산보조금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설근로자 명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복지팀(☎ 02-519-2094)



건설근로자 자녀 인터넷 수강 지원

지원내용

- 건설근로자 자녀에게 인터넷 강의(스카이에듀 www.skyedu.com) 무료수강권 또는 할인쿠폰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무료수강권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26일 이상이고, 최근 1년 이내 신고·적립된 근로내역이 있는 건설근로자의 고등학생 자녀
- 유료 할인쿠폰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제한 없이 최근 1년 이내 신고·적립된 근로내역이 있는 건설근로자의 고등학생 자녀

신청서류

- 건설근로자 자녀 인터넷 수강지원 신청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건설근로자 명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신청방법

- 팩스(0505-182-8332) 송부,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복지팀(☎ 02-519-2094)



건설근로자 가족힐링캠프 실시

지원내용

- 매년 초(4월중) 사연공모를 통해 선정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동반 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서류

- 건설근로자 가족힐링캠프 신청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건설근로자 명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 가족힐링캠프 신청 사연 1부(생활 속 모습이 담겨져 있는 애뜻한 이야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피공제자, 동반가족)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및 등기우편, 팩스 접수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복지팀(☎ 02-519-2092)





건설근로자 복지지정시설 운영 (별첨1 참조)

-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근로자에게 숙박, 의료 등 할인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 숙박 지원 : 대명리조트, 더케이호텔, 영랑호리조트 등
- 의료 지원 : 경희의료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유디치과
- 법률 지원 : 미래 노무법인
- 상조 지원 : 예다함, 에이플러스 라이프
- 기타 : 파라다이스 도고(물놀이시설), e-제너두(온라인 복지몰), 통인(이사업체), 스카이에듀(온라인 교육기관)



건설근로자 종합지원이동반 운영

지원내용

- 퇴직공제 적립내역 확인
- 건설근로자 복지(단체보험, 자녀 장학지원금, 결혼·출산보조금 지원, 자녀 인터넷 무료수강 지원 등) 사업 안내
- 무료취업지원 및 기능향상 훈련사업 안내

시간 및 장소

- 수도권 새벽인력시장 6곳* 순회 방문 및 건설현장에서 05:00~14:00까지 운영

* 종합지원이동센터 방문 새벽인력시장('17년 기준)

구 분	주 소
남구로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남구로역 사거리
대림역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역 7번 출구
신정동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191-11 2호선 신정네거리역 2번 출구
면목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20(면목역)
성남 태평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태평고개사거리
영등포로터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88 현대카드 영등포사옥 앞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복지팀 ☎ 02-519-2097, 2098)



문의처

• 인터넷 www.cwma.or.kr 접속 → 복지서비스



〈건설근로자 생활안정 대부사업 시행〉

- 임시·일용 고용형태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일시적인 생계 도움이 필요한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대부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에서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청사유)

- ① 자녀 결혼자금 지원
- ②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 ③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입원·수술비 지원
- ④ 본인 명의 주택구입 및 주거 목적의 전·월세 보증금
- ⑤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⑥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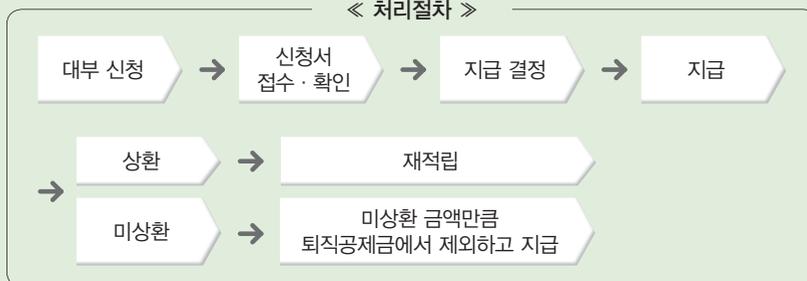
지원내용

- 건설근로자 본인 퇴직공제 적립원금의 최대 50%까지 무이자 대부

대부기간 및 상환방법

- 대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일시·분할·조기상환 가능
- ※ 미상환시 처리방법 : 향후 건설업에서 퇴직 시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면 상환하지 않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퇴직공제금으로 받게 됩니다.

〈 처리절차 〉



시행시기

- 2016년 10월부터 실시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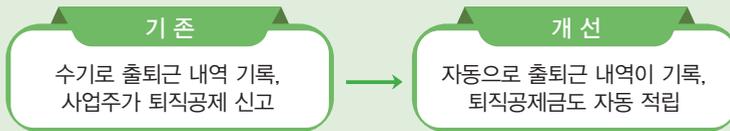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연락처 별첨4 참조)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전자카드제) 시범사업 운영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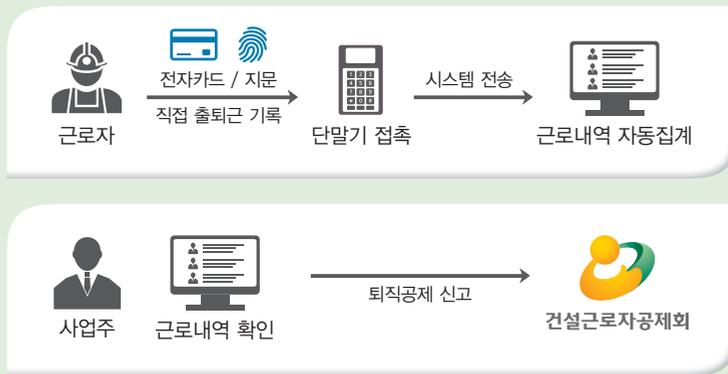
- 전자카드제란, 퇴직공제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시 본인 명의로 발급 받은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출퇴근 내역을 직접 입력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무내역 신고방식 변경〉



운영방식

- 금융형 전자카드(신용카드) + 지문인식



카드발급 신청

시범사업장 및 신한카드 · 하나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가능

시범 사업장 : 전국 34개소

- 수도권 32개소, 영남 1개소, 호남 1개소 (서울시 및 LH공사 발주 현장)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사업팀 (☎ 02-519-2075)



건설근로자를 위한 정부지원제도가 있나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근로·자녀 장려금 등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 대상훈련에 참여하는 분에 한해 훈련기간 중 최대 1,000만원(연 1%)까지 장기 저리로 생계비를 대부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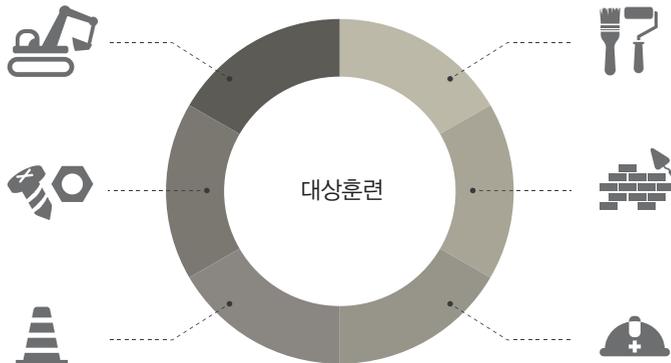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며, 훈련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인 자

구 분	대 상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을 취득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 연간소득 3,000만원 초과자 제외
전직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한 자 ※ 연간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초과자 및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제외

- ※ 신규실업자(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자)는 대부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제외

대상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3주(21일) 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

- 훈련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 훈련은 합산하여 총 기간이 3주(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32시간)이상인 훈련도 포함
- 대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 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4주 미만)의 훈련을 포함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 대상훈련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비정규직근로자 대부 대상훈련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근로자직무능력향상 훈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목적 훈련,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 등

전직실업자 대부 대상훈련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사업주지원 훈련,
컨소시엄 훈련, 채용예정자 훈련,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 등

※ 세부 훈련과정 확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드림넷(www.cid.or.kr)
- 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훈련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지식포털(www.hrd.go.kr)

대부한도 및 상환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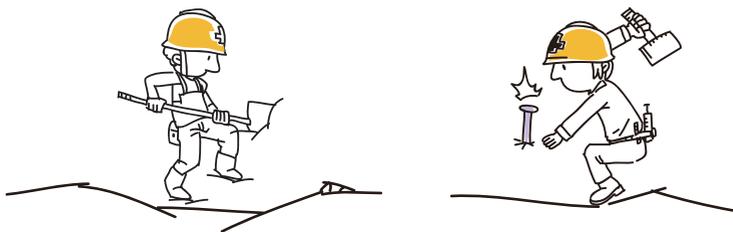
- 대부한도액 : 1인당 1천만원 이내
 - ※ 대부금액은 1인당 대부 한도 내에서 잔여 훈련기간에 따라 결정
- 대부금 지급 : 훈련수당 기간 동안 월별 1백만원 한도 분할대부
 - ※ 분할대부기간 동안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차 미납 등의 사유 발생 시 분할대부 실행 중지
- 대부금리 : 연 1.0%
 - ※ 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대부 실행 시 보증료 선공제함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및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팩스 불가능)

신청절차

-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제출 → 대부대상자 결정 → 보증서 발행 → 1회차 대출실행(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 2회차 이후 매월 15일 자동실행
 - ※ 대부 실행을 위해서는 IBK기업은행 통장과 인터넷뱅킹 가입 필수



구비서류

공 통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및 서약서
비정규직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서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국세청)or 전년도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의 대부 신청 퇴직증명서나 휴직증명서
전직실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증명서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국세청)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근로·자녀장려금

-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 및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자격

- 부양자녀·배우자·연령 요건 :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40세 이상 이어야 함.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입양자를 포함하며,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음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총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70만원
홀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17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210만원

〈자녀장려금〉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홀벌이가구	4,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50만원
맞벌이가구	4,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50만원

※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가구 :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은 1억 4천만원 미만, 자녀 장려금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함
 -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 재산 합계액이 1억 이상자는 장려금의 50% 지급
- 신청 제한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제외)
 - 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자(자녀장려금만 해당)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중복적용배제
 -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공제는 중복 적용 불가
 -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불가

지원내용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① 600만원 미만	① × 600분의 77
	② 600만원 ~ 900만원 미만	77만원
	③ 900만원 ~ 1,300만원 미만	77만원-[(③-900만원) × 400분의 77]

구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족 가구	홀벌이	④ 900만원 미만	④ × 900분의 185
		⑤ 900만원 ~ 1,200만원 미만	185만원
		⑥ 1,200만원 ~ 2,100만원 미만	185만원-[(⑥-1,200만원)×900분의 185]
	맞벌이	⑦ 1,000만원 미만	⑦ × 1,000분의 230
		⑧ 1,000만원 ~ 1,300만원 미만	230만원
		⑨ 1,300만원 ~ 2,500만원 미만	230만원-[(⑨-1,300만원)×1,200분의 230]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홀벌이	①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
	②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②-2,100만원) ×1,900분의 20]
맞벌이	③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
	④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 [50만원-(④-2,500만원) ×1,500분의 20]

제출서류

- 장려금 신청서, 근로소득 증거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산증거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신청방법

• 정기신청

- 신청기간 : 매년 5월
- 신청방법 : 국세청 (☎ 1544-9944)
모바일 홈택스앱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서면신청

• 기한 후 신청

- 신청기간 : 정기 신청기간 종료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국세청 (☎ 1544-9944), 인터넷 홈택스, 서면신청
- ※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의 10% 감액



주거안정자금 지원

-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시)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7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인 무주택자

지원내용

-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연 2.25~3.15%)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드립니다.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또는 홈페이지(www.hf.go.kr) 신청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 신한 · 국민 · 농협 · 하나은행 등)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지원내용

- 주택구입자금을 연 3%대의 저금리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또는 홈페이지(www.hf.go.kr) 신청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 신한 · 국민 · 농협 · 하나은행 등)



버팀목전세 자금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시)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신혼부부 등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 주인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인 무주택자

지원내용

-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보증료 연 0.1~0.28%로 신용 보증해 드립니다.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예정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부(☎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080-800-9001)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 신한 · 국민 · 농협 · 하나 · 중소기업은행)

버팀목대출 보증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신혼부부 등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 주인 경우에는 만 25세 이상)인 무주택자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보증료 연 0.1~0.28%로 신용 보증해 드립니다.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예정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됩니다.

문의처

- 은행(우리 · 국민 · 기업 · 농협 · 신한 ·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전세자금 대출과 함께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시)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대상자
(우대형)
 - 무소득 취업준비생(만 35세 이하)
 -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지원내용

- 월세자금을 우대형(연 1.5%), 일반형(연 2.5%)로 매월 30만원까지 2년간 대출해 드립니다.
(총 720만원 한도)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 국토부(☎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080-800-9001)
- 은행(우리 · 국민 · 기업 · 농협 · 신한 · 하나은행)에 방문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지원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 대출 대상자

지원내용

-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월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월세금의 90%까지 신용 보증해 드립니다.
 - ※ 매월 최대 27만원씩 2년간 총 648만원 한도

문의처

- 은행(우리 · 국민 · 기업 · 농협 · 신한 · 하나은행)에 방문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전세자금 보증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지원내용

- 시중 은행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보증료 연 0.1~0.28%로 최대 2억원 까지 신용 보증해 드립니다.

문의처

- 16개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경유 차량 조기 폐차 시 지원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정밀검사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 기준이내인 자동차
- 서울특별시 등 또는 철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문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저소득층 소액금융지원

- 긴급자금이 필요하게 된 경우 무담보로 소액대출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분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학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
- 영세자영업자로서 긴급운영자금, 시설개보수자금 등을 필요로 하는 분 등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등 목돈이 소요되는 생활필수자금, 부모 또는 조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요양에 필요한 자금,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드립니다.

지원대상

- 의료비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근로자('17년 기준 243만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임금감소생계비 :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여 감소한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17년 기준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 : 월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여 감소한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17년 기준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총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생활 자금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인당 500만원 (최대 1,000만원)	1인당 500만원 (최대 1,000만원)	1,000만원	200만원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에 접속한 후 “일반근로자 대부신청”



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이혼, 단전, 휴·폐업, 실직, 출소, 노숙)

• 소득·재산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75%(1인기준 123만 9천원, 4인기준 335만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지원횟수
생계 지원	115만 7천원(4인기준)	최대 6회
의료 지원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지원	63만 6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3만 4천원 이내(4인기준)	최대 6회
교육 지원	초등학생 21만 9천원, 중학생 34만 8천원, 고등학생 42만 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주거지원 가구는 4회)
연료비 지원	9만 5천원(10월~3월/월)	최대 6회
해산비 지원	60만원	1회
장제비 지원	75만원	1회
전기요금 지원	50만원 이내	1회
단체 등 연계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신청방법

-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 129) 신청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으며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됨



미소금융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창업예정자 포함) 및 금융취약계층
 - ※ 지원기준(신용등급)은 '17년 1분기 중 7등급 이하→6등급 이하로 완화 예정
 - ※ 2인 이상 공동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경우도 지원

지원내용

- 자영업자대출은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 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7천만원, 무등록사업자 5백만원 이내
 - ※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최대 1천 2백만원 까지 대출 가능

신청방법

-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미소금융재단 지점에 신청



바꿔드림론

지원대상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사람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 신용등급 6~10등급이며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사람
 - ※ 지원기준(소득요건)은 '17년 2분기 중 3천만원 이하→3천 5백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신용등급 6~10등급)→4천 5백만원 이하(신용등급 6~10등급)로 확대 예정

지원내용

- 제도권 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를 통해 빌린 연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최대 3천만원까지 전환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국민행복기금에 신청



새희망홀씨

지원대상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사람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신용등급 6~10등급인 사람
 - ※ 지원기준(소득요건)은 '17년 2분기 중 3천만원 이하→3천 5백만원 이하, 4천만원 이하(신용등급 6~10등급)→4천 5백만원 이하(신용등급 6~10등급)로 확대 예정

지원내용

- 생계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을 연 10.5% 이내의 금리로 최대 2천 5백만원까지 대출해드립니다.

신청방법

- 각 은행 신청(한국이치론 ☎ 1644-1110)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

- I 유형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II 유형 : 가구 전체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이면서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지원내용

- I 유형 :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지원금(월평균 30만원) 지원
 - ※ 3년 이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 II 유형 :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10만원, 본인 저축액 1:1 매칭) 지원
 - ※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고 재무·금융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적립금 전액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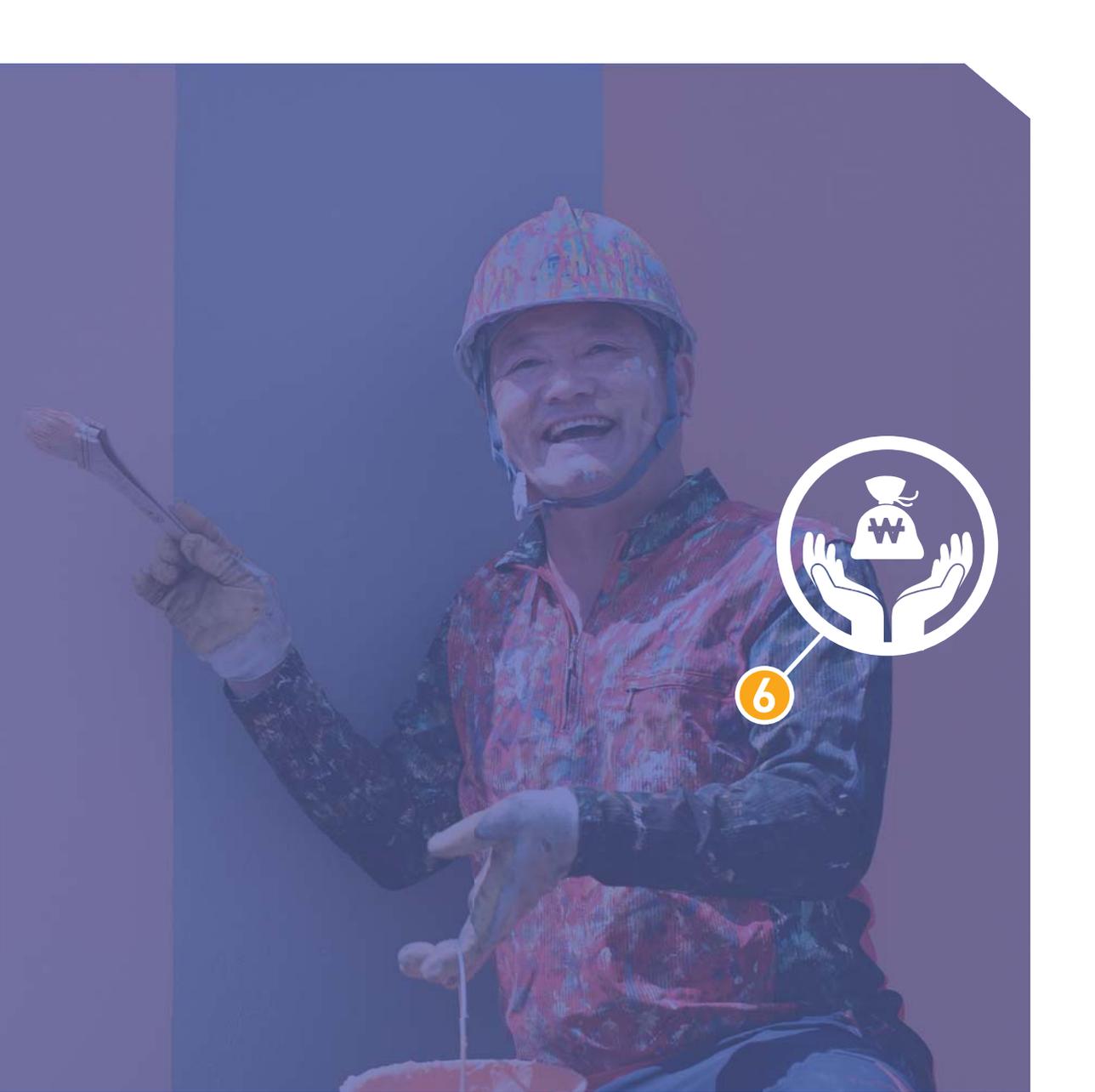
신청방법

- 주민센터 신청(보건복지콜센터 ☎ 129)

※ 자료출처 : 생활세금시리즈(2016, 국세청)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안내 리플릿(2016, 근로복지공단)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2017,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업 퇴직 후 퇴직공제금을 받고 싶을 때

12. 퇴직공제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3. 신용불량자도 퇴직공제금을 직접 받을 수 있나요?



퇴직공제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여러 건설사업장을 자주 이동하며 일하느라 법정퇴직금 혜택을 받기 힘들었던 건설근로자도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이란?

-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사업주가 소속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근로자가 매월 근로한 일수만큼 공제회에 신고·납부하는 금액으로, 대상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일용 근로자입니다.

※ 2017.4월 현재 1일 퇴직공제금은 4,000원임



퇴직공제금은 누가 적립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직·임시직 건설근로자는 소속 업체나 국적에 관계없이 퇴직공제금을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현장이 퇴직공제에 가입되어 있나요?

- '17.4월 현재 3억원 이상 공공공사 현장, 200호 이상 공동주택 현장,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 현장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입현장 확인방법〉

- 1) 공사현장 출입구, 현장사무실 등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 사업장” 표식을 확인
- 2) 스마트폰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확인
- 3) 건설근로자공제회 전국 지사(별첨4 연락처 참조)로 문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 사업장 표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퇴직공제금을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Construction Workers Mutual Aid Association

적립일수 확인 : 1666-1133
대표전화 : 1666-1122

공제가입 사업주는 법률에 따라 매월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대장"을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반드시 게시하여야 합니다.

적용대상 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 - 국적, 소속, 직종,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 ● 관련법률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자격)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 퇴직사유: 새로운 사업 시작, 타업종 이직, 건설업 상용직 위업, 부상·질병 등 ● (지급금액)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

스마트폰으로 내 주변 가입사업장과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을 쉽게 확인하세요!

·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검색, 설치 후 접속
· 인터넷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검색 후 접속 또는 주소창에 www.cwma.or.kr 입력





퇴직공제금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 자격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 신청 가능
 - ※ 퇴직이란, 일이 없어 잠시 쉬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그만두고 떠나게 된 때 (사망 포함)를 말함

신청자

- 건설근로자 본인(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유족)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온라인 퇴직공제금 청구 시스템
(<http://1122.cwma.or.kr>) 접속하여 신청
- 전국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별첨4 참조)
(방문, 우편, 팩스, E-Mail(1122@cwma.or.kr) 접수)

〈온라인 퇴직공제금 청구 시스템〉



신청 시 구비서류

- ①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근로자용 서식)
- ② 본인 신분증 사본
- ③ 지급청구사유에 따른 해당증명서류 1부.
- ④ 기타 건설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복지수첩(과거 증지가 첨부된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⑤ 본인서명사실확인서(2017년 5월 1일 이후 팩스, 이메일, 우편 청구 시)
※ 인감증명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가능

〈건설근로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청구하는 경우〉

- ①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근로자용 서식)
- ② 청구인 유족의 신분증 사본
- ③ 사망신고 표기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중 1부
-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⑤ 생계를 같이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⑥ 기타 건설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복지수첩(과거 증지가 첨부된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확인방법?

- 건설현장 관리사무소에서 “퇴직공제 적립내역서”를 출력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RS 1666-1133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홈페이지(m.cwm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서비스 개편

스마트폰으로 지금 사용해보세요!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는 방법

- 직접 설치, 간편한 접속

앱 스토어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검색 후 설치!

인터넷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검색 후 접속하는 방법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제부금 적립내역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공제회 사무실 위치	고용·복지 사업안내	

대표전화 1666 - 1122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장비(타워크레인, 지게차 등) 운전원도 퇴직공제 가입 대상에 해당되나요?

- 장비운전원이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로서 1년 미만의 임시·일용 근로자라면 가입 대상이 되며, 운전원을 고용한 건설사업주는 운전원의 근로일수에 따른 공제부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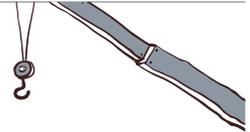
건설일용근로자가 동일 현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법정퇴직금이 발생해도 퇴직공제제도가 적용되나요?

- 건설일용근로자가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이 된 때에는 사업주가 그 이후의 기간(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는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정 퇴직금 발생 시점 이전까지 적립된 퇴직공제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 1666-1122)
- 인터넷 www.cwma.or.kr 접속 → 소통과 참여 → 자주하는 질문



〈 온라인 교육콘텐츠 활용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고용·복지 사업 등에 대한 온라인 동영상 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www.cwma.or.kr 접속 → “퇴직공제서비스” → “퇴직공제업무 안내” → “학습하기” 클릭



신용불량자도 퇴직공제금을 직접 받을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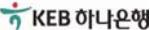
신용불량자도 퇴직공제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퇴직공제금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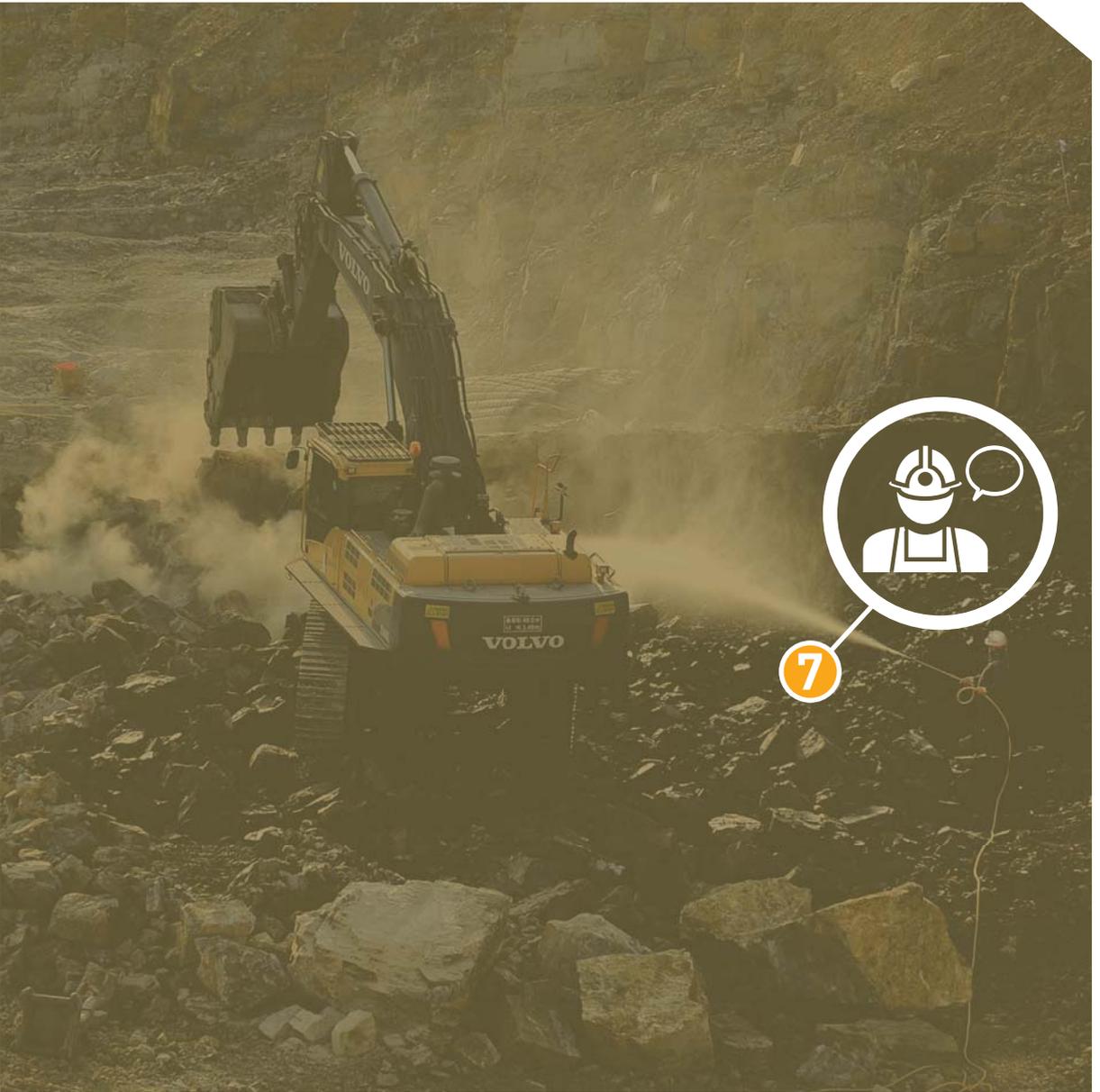


「퇴직공제금지킴이」 통장으로 안전하게 지급 받으세요.

- 퇴직공제금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은행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본인 명의의 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건설근로자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전국 각 지점을 방문하여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을 발급 받아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안내 〉

구 분	내 용
상 품 명	『우리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하나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가입대상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개인
입금제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되는 퇴직공제금만 입금 가능 ※ 타 용도로는 사용 불가
적용금리	연 2.0%
상품특징	본 통장은 법원의 압류결정통지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됨
수수료 면제	매월 총 10회 면제 - 전자금융(인터넷, 텔레, 모바일) 당행·타행 이체 수수료 - 우리은행·하나은행 자동화기기 이용 현금출금 수수료
세제혜택	본인의 가입한도 내에서 생계형(비과세) 저축으로 가입 가능
통장발급	우리은행·하나은행 전국 지점
이용문의	 (☎ 1599-5000, 1588-5000)  (☎ 1599-1111, 1588-1111)



기타 유용한 정보

14.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5. 경력증명을 받을 수 있나요?
16. 직업소개 수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17. 건설일용근로자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전사고 예방방법 등 건설안전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설현장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의 목적

-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현장 근무 시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건설현장 의무적용

- 건설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대상

-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채용 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교육의무 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교육내용 및 시간

구 분	교육내용	시 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교육실시 기관 확인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 종합시스템 홈페이지(www.kosha.or.kr/ksoha-edu)→건설업 기초안전교육 → 등록된 교육기관

교육이수 여부 확인 방법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 종합시스템 홈페이지(www.kosha.or.kr/ksoha-edu)→건설업 기초안전교육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 조회

교육 절차**교육실시 의무 위반 시 처분**

- 교육을 미 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 부과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지원을 위하여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목적은?

- 근로자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 건강센터”의 설치·운영으로 근로자 질병상담 등 다양한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건강관리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센터 이용 시 가능한 서비스 내용은?

- 근로자 건강(질병)상담실 운영(근로자 건강에 대한 모든 상담, 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상담, 직무스트레스 상담, 업무 적합성 평가 등)
 - 직업환경(작업관리) 상담실 운영
 - 근골격계질환예방실 운영
 - 뇌·심혈관질환예방실 운영
 - 심리상담실 운영

센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 직업환경의학전문의를,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인간공학기사, 물리치료사, 심리상담사 등 직업건강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운영

센터의 운영시간은?

-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탄력적 운영)

센터 이용요금은 얼마인가요?

- 이용요금 전액 무료

어디에 가면 이용이 가능한가요?

- 아래 21개 지역에서 운영 중입니다.

지역	주소	전화번호
서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BYC하이시티 B동 213호	02-6947-5700~3
서울 강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 A동 1406호	02-2093-2650~2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4층	032-260-3666
부천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 22 부천테크노파크 1단지 관리동 301호	032-329-9161
경기 동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8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12층	031-739-9301
경기 서부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47 KT시화지사 3층	1577-6497
경기 남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디지털엠패이어빌딩 C동 205호	031-303-8953
경기 북부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검준길 82(상수리 667-8)	031-858-9030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6층	041-417-1280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65, 한신에스메카 1층 135호	042-936-9571
원주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6층 604호	033-745-7289
전남 동부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중앙로 23 YM빌딩 3,4층	061-692-6710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신단3번로 133-8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062-962-7151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KT팔복빌딩 2층	063-211-9988
경북 북부	경상북도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24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 1층	054-475-2511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971-2 대구비즈니스센터 7층	1577-6497
경산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26 강산시근로자복지회관 2층	053-853-8579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 완암로 50 SK테크노파크 테크동 1109호	055-713-2400~1
울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90	1577-6497
부산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벽산디지털밸리 1층 111호	051-329-7300~2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064-752-8961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사항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사항

1.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조치
2. 작업발판 및 개구부 등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장소에 안전간판, 울타리 및 덮개 설치
3.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등 설치
4. 지반의 굴착장소 등에는 안전기울기 유지, 흙막이 지보공 등 설치
5.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실시 및 조립도에 따라 조립
6. 건설현장에 종사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해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목적(근로자 안전보건 확보)에 맞게 집행
8. 공사규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선임

근로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

1.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2. 급박한 위험상황 시 작업을 중지한 후 대피하고,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
3. 방호장치 해체금지,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사업주에게 신고
4.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운전자가 운전정지 시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
5. 사업주가 지시한 각종 안전조치사항(장비 유도, 제한속도 등) 준수





건설현장 사망재해 예방 대책

철근콘크리트 공사(떨어짐)

이럴 때 사망재해가 발생합니다!

철근콘크리트 작업 중 떨어짐에 의한 사망재해는 ①슬래브 및 보 거푸집 설치 작업 또는 상부 이동 중 안전대 미착용, ②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해서 주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예방하세요!

- ① 슬래브 및 보 거푸집 상부로 이동 중에는 떨어질 위험이 높으므로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이동 및 작업 실시
- ② 떨어질 위험이 높은 구간에서 작업할 경우 하부에 안전방망 설치

철근콘크리트 공사(무너짐)

이럴 때 사망재해가 발생합니다!

철근콘크리트 작업 중 거푸집동바리 무너짐에 의한 사망재해는 ①거푸집동바리 구조 검토 미실시, ②단상(2단) 구조로 조립, ③콘크리트 타설 방법 불량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예방하세요!

- ① 거푸집동바리 작업 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한 후 그에 따라 조립
- ② 단상구조(써포트+각재+써포트 등)의 거푸집동바리는 설치 금지
- ③ 콘크리트 타설 중 슬래브가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골고루 분산타설 하여야 하며, 하부에 감시자를 두어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타설을 중지하고 보강조치 실시

건설기계 관련 작업(부딪힘, 끼임, 맞음)

이럴 때 사망재해가 발생합니다!

철건설기계 작업 중 부딪힘, 끼임, 맞음 및 떨어짐에 의한 사망재해는 ①작업 유도 및 신호미실시, ②기계장비의 결함, ③위험구간 근로자 접근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예방하세요!

- ① 자재 하역, 자재 양중 및 운반 작업과 지반 천공, 굴착작업 및 토사 반출작업 중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시에는 위험 작업구간에 근로자 접근 방지를 위하여 작업유도자(신호수)를 배치
- ② 작업유도자(신호수) 배치 시 작업유도자(신호수)는 식별용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안전구역에서 작업을 유도, 신호
- ③ 건설기계 작업 전 건설기계의 방호장치, 용접부위 및 이음부 등 자체 결함 여부 사전점검

화물운반 작업(교통사고)

이럴 때 사망재해가 발생합니다!

건설현장의 화물운반작업 중 도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재해는 ①안전운전 의무위반(과속, 신호 미준수 등), ②작업장 전방 안전표지판 설치 불량, ③신호 작업 불량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예방하세요!

- ① 화물운반작업을 위한 도로 주행 시 규정 속도 준수, 안전띠 착용 및 교통 신호 준수
- ②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공사 시 전방에 공사 확인 안전표지판 설치 및 차량 유도물 설치
- ③ 화물운반작업, 도로교통 신호 시 신호수는 신호봉, 식별용 조끼 착용하고 안전 구역에 위치

토공사(무너짐 및 부딪힘)

이럴 때 사망재해가 발생합니다!

토공사 작업 중 무너짐 및 부딪힘에 의한 사망재해는 ①건설장비에 부딪힘, ②굴착작업 시 기둥기 미 준수에 의해 주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예방하세요!

- ① 건설기계장비의 부딪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비유도자를 배치하고 운전원 및 근로자는 유도자의 신호를 준수
- ② 지반 굴착작업 시 굴착경사가 급해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굴착면 기둥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흠막이가시설 설치

철골조립공사(떨어짐, 맞음)

이럴 때 사망재해가 발생합니다!

철골구조물, 흠막이 가시설 등 철골 설치작업 중 떨어짐 및 맞음에 의한 사망 재해는 ①떨어짐방지망 미설치, ②근로자 안전대 미착용, ③인양 방법 불량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예방하세요!

- ① 눈으로 봐도 가장 위험한 건설작업이 바로 철골 작업이므로 작업장 하부에는 떨어짐 방지망을 설치
- ② 철골 위에서 이동 및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걸고 이동 및 작업 실시
- ③ H-Beam 등 철골자재를 양중 할 때에는 사전에 줄걸이 방법, 체결상태 확인 등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물체가 떨어질 위험구간에는 근로자 출입을 금지

조적, 미장, 방수공사(떨어짐, 산소결핍)

이럴 때 사망재해가 발생합니다!

조적, 미장, 방수작업 중 떨어짐 및 질식(산소결핍)에 의한 사망재해는 ①작업 발판 설치 불량, ②정리정돈 불량, ③밀폐 공간 작업 전·중 계속 환기 미 실시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예방하세요!

- ① 미장 및 조적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은 튼튼하게 설치하고 이동식 비계 및 말비계 설치 시 작업발판 폭은 40cm 이상으로 확보
- ②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 ③ 밀폐공간에서 방수작업 시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유해가스 농도를 수시로 체크하여 산소결핍 및 화재폭발 재해를 예방

비계 등 가설구조물공사(떨어짐, 무너짐)

이럴 때 사망재해가 발생합니다!

비계 등 가설구조물 작업 중 떨어짐 및 무너짐에 의한 사망재해는 ①작업 발판 설치불량, ②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③벽이음, 아웃트리거 등 무너짐 방지 조치 미흡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예방하세요!

- ① 비계에는 이동 및 작업 중 떨어질 위험이 높으므로 작업 발판을 견고하게 설치
- ② 발판 단부에는 떨어짐 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근로자는 안전대를 걸고 작업
- ③ 비계, 이동식비계 등 가설구조물은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전용철물로 벽이음(아웃트리거)을 기준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

지붕공사(떨어짐, 물체에 맞음)

이럴 때 사망재해가 발생합니다!

경사지붕 등 마감작업 중 떨어짐 및 맞음에 의한 사망재해는 ①경사지붕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②안전대 미착용, ③자재 적치불량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예방하세요!

- ① 경사 지붕공사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므로 작업 전 지붕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
- ② 근로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 작업 중 미끄러지거나 떨어질 위험을 방지
- ③ 경사 지붕에서 사용하던 공구, 도구나 쌓아놓은 자재가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방망(그물코 2cm이내)을 설치하거나 위험구간 출입을 통제

외부 도장공사(떨어짐)

이럴 때 사망재해가 발생합니다!

외부 도장, 도색 작업 중 떨어짐에 의한 사망재해는 ①달비계 로프가 풀리거나 끊어짐, ②수직구명줄 미설치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예방하세요!

- ① 달비계 지지로프가 풀리거나 끊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상부에 2개소 이상 로프를 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묶어야 하며 지지로프는 22mm 이상 로프를 사용
- ② 달비계 작업 시에는 수직구명줄을 별도로 설치하여 작업자가 수직구명줄에 추락(떨어짐)방지대를 걸고 작업하여 떨어짐에 의한 재해를 예방

상하수도 공사(무너짐, 부딪힘, 맞음)

이럴 때 사망재해가 발생합니다!

상하수도 공사의 관로 부설작업 및 도로 포장작업 중 토사 무너짐, 건설장비 부딪힘, 인양화물 맞음 재해는 ①굴착면 기울기 기준 미준수, ②신호수 미배치, ③줄걸이 방법 불량으로 인해 주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예방하세요!

- ① 관로 부설을 위한 지반 굴착 시 굴착면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여 토사붕괴를 방지
- ② 도로 포장을 위한 건설기계작업 시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부딪힘 재해를 예방
- ③ 관로 운반 시 2줄 걸이로 균형을 잡고 운반하여야 하며 양호한 상태의 줄을 사용(와이어 로프, 슬링벨트 등)



건설안전예방 자료 찾는 방법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접속 → 정보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 1644-4544)
- 인터넷 www.kosha.or.kr 접속 → 정보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 자료출처 : 안전보건 나침반-건설업(2017, 안전보건공단)





경력증명을 받을 수 있나요?

건설근로자는 근무경력, 교육·훈련 이수정보, 자격증 취득정보를 증명해주는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3에 따라 근무경력, 교육·훈련 이수정보, 자격증 취득정보를 증명 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대상 : 모든 건설근로자

신청방법

- 접수처 : 가까운 공제회 사무실 및 홈페이지(career.cwma.or.kr)
-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 신분증 지참

수수료 : (인터넷) 무료, (방문) 2,000원/1부

경력확인 내용

관리 항목	인정 범위
근무경력	• 퇴직공제 및 고용보험 사업장별 근무경력
교육·훈련	• 공제회 실시 교육·훈련 • 고용노동부 실시 교육·훈련
기술(기능)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국가 자격증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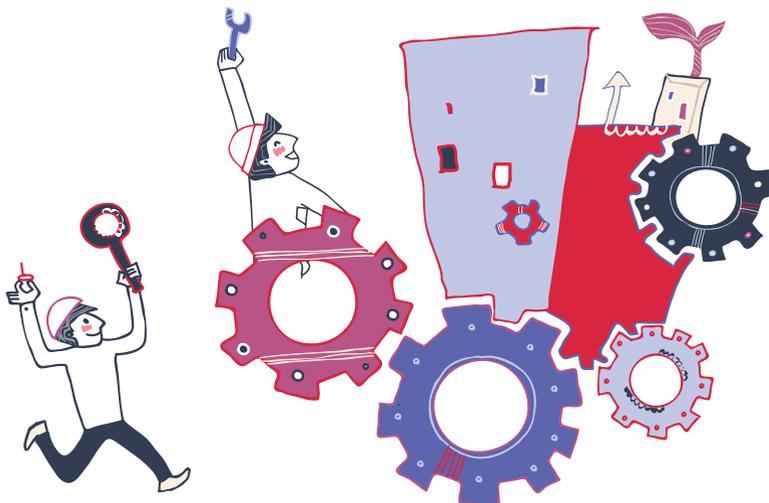
- 한국산업인력공단 :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증빙서류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인정기능사 구비서류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점 부여 증빙서류
- 기타 건설현장 근무경력 및 자격사항 입증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 1666-1122)
- 인터넷 www.cwma.or.kr/career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 접속

〈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 〉





직업소개 수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직업소개요금은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통한 취업 시 근로계약 등에 정해진 규정이 있으면 일정 금액을 내야하나, 지나치게 높은 직업소개요금 요구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란?

- 구인(일할 사람을 찾는 자) 또는 구직(일자리를 찾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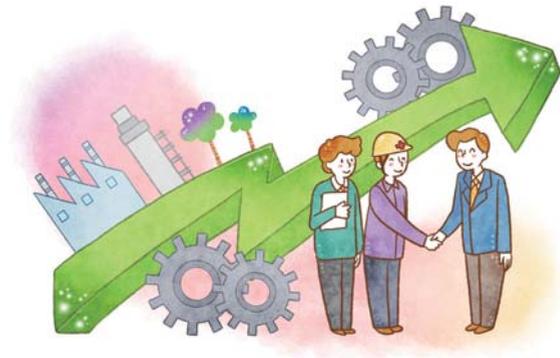
근로자가 내야 하는 직업소개 요금은 얼마입니까?

- 직업소개요금은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이후에 규정에 따라 징수합니다.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4% 이하
 -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4% 이하
 -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하는 경우는 소개요금에 같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각각 월 3만 5천원의 범위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음
- 직업환경의학전문의,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인간공학기사, 물리치료사, 심리상담사 등 직업건강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운영
 - ※ 회원인 일용근로자에게는 월 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음



직업소개 부조리 신고 및 문의처

- 주소지 시·군·구청(지역경제·일자리관련 부서)
- 전국 고용센터 (☎ 국번없이 1350)





건설일용근로자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건설근로자도 일급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소득세를 내야하며, 근로소득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정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범위는?

-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 ※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직영인부, 용역(소개소), 현재직, 장비근로자 등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얼마나 원천징수 하나요?

- 일용근로자는 매일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일반근로자들처럼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하며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계산구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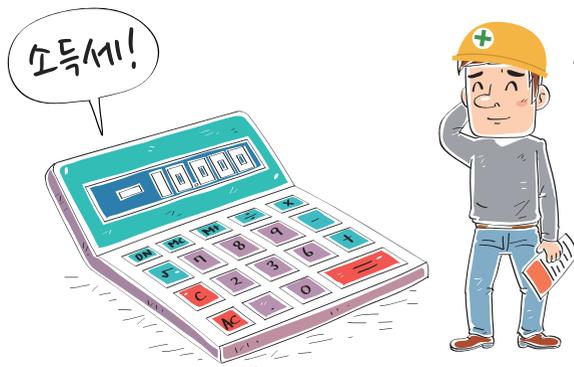
- ◆ 근로소득세 산출식(원천징수액)

$$[(\text{일급액} - 10\text{만원}) \times \text{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 55%)

* 일당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음

- ◆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소액 부징수)

- ◆ 매일의 급여를 일정기간을 단위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1일당 소득세가 1,000원 미만 이더라도 일괄지급액 기준으로 계산하여 합계액이 1,000원 이상일 경우는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퇴직공제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 되는 퇴직소득세는 얼마인가요?

•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때는 소정의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소득세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퇴직소득세 산출식(원천징수액)

- 종전규정

$$\textcircled{1} = \text{퇴직소득} - \text{근속공제} - \text{정률공제}(40\%)$$

$$\textcircled{2} = \textcircled{1} \div \text{근속연수} \times 5$$

$$\textcircled{3} = \textcircled{2} \times \text{기본세율}(6\sim 38\%)$$

$$\textcircled{4} = \textcircled{3} \div 5 \times \text{근속연수}$$

- 개정규정

$$\textcircled{5} = \text{퇴직소득} - \text{근속공제}$$

$$\textcircled{6} = \textcircled{5} \div \text{근속연수} \times 5$$

$$\textcircled{7} = (\textcircled{6} - \text{환산급여공제}) \times \text{기본세율}(6\sim 38\%)$$

$$\textcircled{8} = \textcircled{7} \div 12 \times \text{근속연수}$$

◆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소액 부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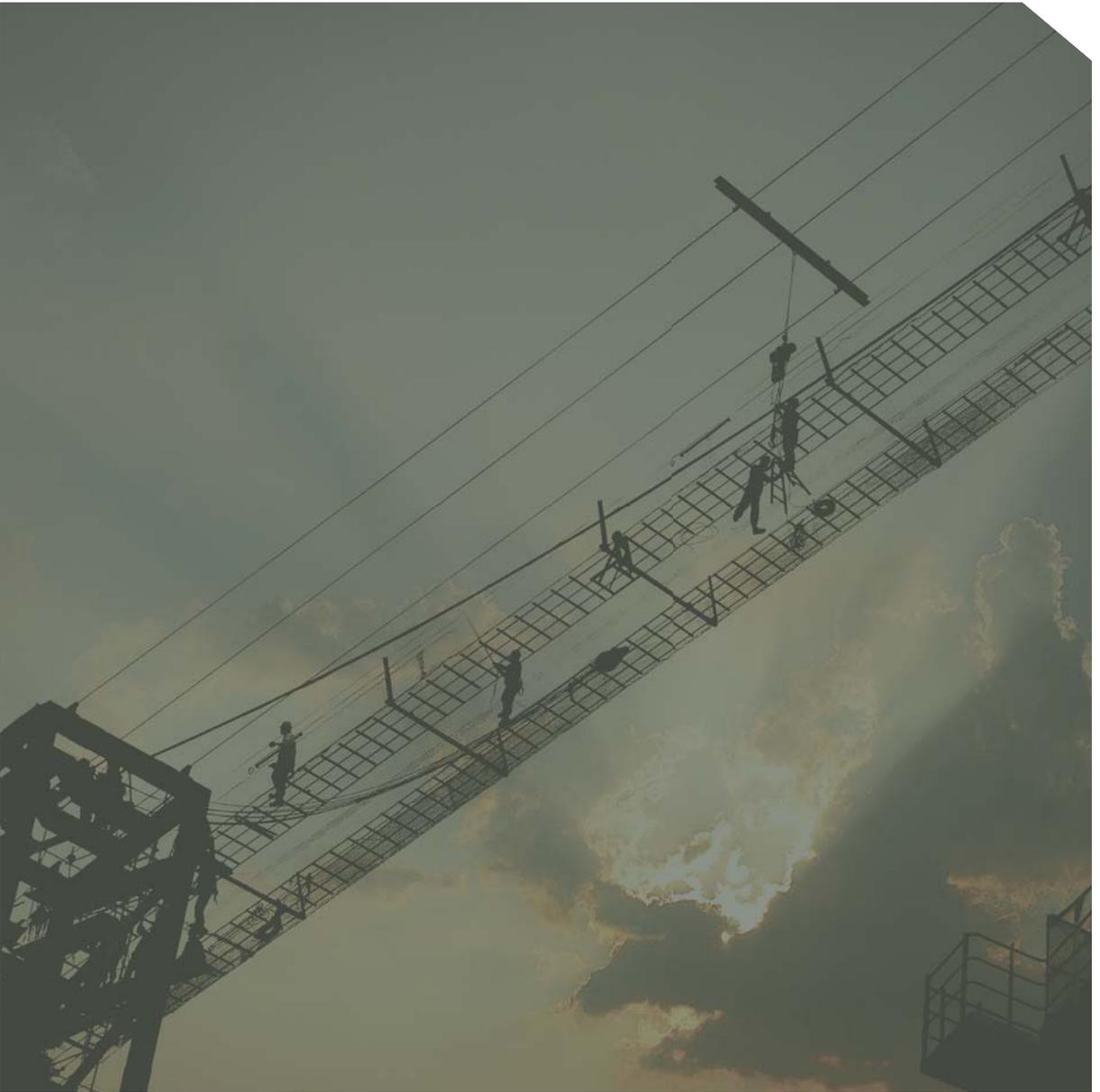
◆ 2016.1.1~2019.12.31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함

과세기간	퇴직소득 산출세액
2016.1.1.~12.31	$(\textcircled{4} \times 80\%) + (\textcircled{8} \times 20\%)$
2017.1.1.~12.31	$(\textcircled{4} \times 60\%) + (\textcircled{8} \times 40\%)$
2018.1.1.~12.31	$(\textcircled{4} \times 40\%) + (\textcircled{8} \times 60\%)$
2019.1.1.~12.31	$(\textcircled{4} \times 20\%) + (\textcircled{8} \times 80\%)$



문의처

- 국세청 (☎ 126), 전국 지방 세무서
- 건설근로자공제회 (☎ 1666-1122)



별첨

별첨 1. 건설근로자공제회 제휴 서비스

별첨 2. 참여 훈련기관 현황('17년 기준)

별첨 3.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센터 현황('17년 기준)

별첨 4. 건설근로자공제회 연락처

01

건설근로자공제회 제휴 서비스

▶ 숙박

 <p>DAEMYUNG RESOR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대명리조트(델피노, 비발디, 양평, 경주, 단양, 쓸비치, 제주, 변산, 거제, 엠블호텔 여수/고양) 할인 이용 가능 • 예약문의 : 1588-4888(온라인 예약시 법인이용번호 : 49120101)
 <p>The K Hote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교육문화회관(서울, 설악, 경주, 지리산, 제주) 할인 이용 가능 • 예약문의 : 02-571-8100
 <p>특별가는 가족여행 테딘 패밀리 리조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명 : 테딘패밀리리조트 • 위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종합휴양지로 200 • 예약문의 : 041-906-7000
 <p>SHINSEGAE YOUNGRANGHO RESOR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명 : 신세계 영랑호리조트 • 위치 : 강원도 속초시 영랑호반길 170 (영랑호 인근) • 예약문의 : 033-633-0001
 <p>Paradise Spa DOG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명 : 파라다이스 도고 • 위치 : 충남 아산시 도고면 도고온천로 176 • 예약문의 : 041-537-7100
 <p>High Resort 하이원리조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명 : 하이원리조트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7길 399 • 예약문의 : 1588-7789



▶ 의료

☞ 이용방법 :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지참 시 할인혜택 제공	
 <p>경희의료원 KYUNGHEE UNIVERSITY MEDICAL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경희대학교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동서협진센터 • 혜택 : 선택진료비(특진비/외래·입원), 건강검진, 비급여항목 일부 10% 감면 적용(단, 회원 및 직계가족 등록 후 적용 가능) • 등록창구 : 서관 1층 진료협력센터(700번) • 예약문의 : 02-958-8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 위치 :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 59 • 혜택 : 선택진료비, 종합검진 등 10% 내외 감면 적용 • 예약문의 : 02-709-9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유디치과 • 위치 : 홈페이지(전국 110개 지점의 네트워크 보유) • 혜택 : 임플란트, 충치/보철, 교정항목 20%내외 할인 제공 • 예약문의 : 1688-8443

▶ 법률상담 서비스

☞ 이용방법 :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지참 시 할인혜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미래 노무법인 • 위치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하이츠빌딩 1309호 • 혜택 : 무료 상담(전화) 및 사건 수임 관련 각종 할인 혜택 제공 • 문의 : 02-521-5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노무법인 길 • 위치 :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8길 6 노무빌딩 2층 • 혜택 : 무료 상담(전화/인터넷) 및 사건 수임 관련 각종 할인 혜택 • 문의 : 02-454-5785

▶ 상조

☞ 이용방법 :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지참 시 할인혜택 제공



- 시설명 : The-K 예다함(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상조업체)
- 혜택 : 해당 상품(예다함 330/390)에 대한 특화된 혜택 제공
- 문의 : 1566-6644



- 시설명 : 에이플러스 라이프
- 혜택 : 해당 상품(상품1/2/3호)에 대한 특화된 혜택 제공
- 문의 : 1688-8860

▶ 기타

☞ 이용방법 :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지참 시 할인혜택 제공



- 시설명 : e-제너두(온라인 복지 콘텐츠 제공)
- 사이트 : <http://cwma.benecafe.co.kr/>
- 혜택 :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각종 콘텐츠 할인 이용



- 시설명 : 통인익스프레스
- 혜택 : 이사비용 5~10% 할인 및 입주/거주 클리닝, 리빙홈케어 등 기타 서비스 이용 시 할인 혜택 제공
- 문의 : 1899-0123



- 시설명 : 스카이에듀(고등과정 전문 온·오프라인 교육업체)
- 혜택 : 무료 수강권 1인당 2강좌(100명), 30%할인쿠폰(200장) 제공
- 문의 : 1666-1122(공제회 고객센터)
- ※ 선착순으로 제공하므로 조기에 소진될 수 있음

02

참여 훈련기관 현황('17년 기준)

02
02

권역	훈련기관명	훈련직종	훈련 구분	훈련기간		훈련기관	
				개시일	종료일	주소	전화번호
서울 경인	대신기술 능력개발원	미장	주간	2/1	11/27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77 삼원빌딩 3층 310호	02-471-5555
		타일	주간	2/1	11/27		
	서울건설 산업노동조합 서울건설 기능학원	배관	주간	1/18	12/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34 2, 3층	02-2635-9190
		형틀목공	주간	1/23	12/28		
		형틀목공	야간	1/10	11/22		
	이도타일 직업학원	타일	주간	1/23	12/18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67 1층	02-492-2500
	(재)건설 기술교육원	배관	주간	1/16	1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88	032-460-0273
		일반용접·배관	야간	1/16	12/8		
	예가직업전문 인천학원	도장	주간	8/1	12/29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391 4층	032-719-4400
성남건설 기능학교	형틀목공	주간	1/9	12/2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236 영진빌딩 3층	070-7631-5111	
안산건설 기능학교	형틀목공	주간	2/1	12/2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85	031-495-9192	
강원	(주)강원 인재개발원	타일	주간	2/1	12/21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209	033-242-3331
		조적·타일	주간	2/1	12/21		033-242-3332
대전 충청	대한기술 교육학원	배관	주간	2/1	11/23	대전광역시 중구 충무로 25 대동빌딩 3층	042-226-8801
	청남직업 전문학교	일반목공	주간	1/23	11/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로 58, 3, 4층	042-824-2468
		일반목공	야간	2/1	9/19		
	효림건축 인테리어 학원	도장	주간	3/6	12/29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257번길 49(남월동) 효림건축인테리어학원	042-625-9999
		타일	주간	2/1	11/27		
타일	야간	1/16	11/13				
한국전산 직업전문학교(주)	일반용접	야간	2/6	9/2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울천남로 70	043-222-6776	

구역	훈련기관명	훈련직종	훈련구분	훈련기간		훈련기관	
				개시일	종료일	주소	전화번호
광주 전라	(재)한국 능력개발원	미장	주간	2/1	6/30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339 (계림동, 호남직업전문학교)	062-364-8008
		조적·타일	주간	7/3	9/5		
	광주전남 건설기능학교	일반목공	주간	2/1	9/1	광주광역시 북구 자산로 49 (신안동) 건설기능학교(2층)	062-511-6504
		철근	주간	2/1	9/29		
		일반목공	야간	2/27	11/2		
	희망직업 전문학교	도장	주간	1/23	9/13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306(오치동)	062-262-2347
		타일	주간	1/23	9/13		
거송직업 전문학교	플랜트용접	주간	6/15	8/14	전라남도 여수시 성산2길 9	061-685-8089	
여천직업 전문학교	배관	주간	2/1	12/11	전라남도 여수시 대통로 3 (화장동, 경성빌딩) 4층	061-691-8701	
플랜트 건설직업 전문학교	일반용접	야간	1/13	10/23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65-1(구산리)	061-763-9689	
제주	제주건축 기술학원	도장	주간	2/6	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서5길 12-1	064-783-4839
		형틀목공	주간	2/27	8/1		
대구 경북	대구건설 기능교육 훈련학원	일반목공	주간	2/1	11/30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418(내당동)	053-951-9088
	(재)대구 직업전문 학교	조적	주간	2/1	11/22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167 (칠성동2가, 칠성동금류아파트) (재)대구직업전문학교	053-350-1065
		타일	주간	2/1	11/22		
		타일(심화)	주간	2/22	10/18		
	재단법인 이찬 경북직업 전문학교	미장	주간	2/6	10/2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당로 66(용흥동, 경북직업전문학교) 경북직업전문학교	054-272-2828
		타일·조적	주간	2/6	10/20		
타일		야간	2/6	10/20			
영천제일직업 전문학교	타일	주간	6/27	8/23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로 73(완산동)	054-331-0862	
경주직업 전문학교	타일	주간	2/6	6/29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천북로 78-9	054-742-8595	

권역	훈련기관명	훈련직종	훈련구분	훈련기간		훈련기관	
				개시일	종료일	주소	전화번호
부산 경남	대산직업 전문학교	일반용접	주간	7/18	9/13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52번길 20	051-867-0770
		타일	주간	1/23	11/15		
		타일(심화)	주간	6/20	8/16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도장	주간	7/4	9/14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155번길 99-1	051-330-8100
		일반목공	주간	7/4	9/7		
		플랜트용접	주간	2/1	12/7		
	부산건축 직업학교	타일	주간	2/1	12/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 47번길 19(전포동)	051-817-9300
		타일	야간	2/1	12/1		
	부산건축 직업학원	방수	주간	2/1	9/2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69번길 11	051-817-0206
	부산포시드 직업전문 학교	도장	주간	6/27	8/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7 5층	051-853-1555
		일반목공	주간	2/1	11/23		
		일반목공(심화)	주간	2/1	9/20		
	세종직업 전문학교	조적·타일	야간	1/20	11/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수로 14-1	051-861-8333
	경남산업 직업전문 학교	방수	주간	2/2	9/2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 161 (동성동, 청계상가) 3층	055-223-4561
		타일·조적	주간	7/25	9/27		
타일(심화)		주간	2/13	7/6			

03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센터 현황('17년 기준)

▶ 대표번호 : 1666-1829

연번	센터명	내선번호	소재지
1	서울센터	11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 277, 3층 (중앙빌딩)
2	서울동부센터	12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51길 36, 5층 (DSA 빌딩)
3	서울북부센터	13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21, 3층
4	경기광명센터	14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1012, 2층
5	경기남부센터	15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46, 2층
6	부천센터	16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31, 3층 302호 (송내빌딩)
7	경기군포센터	17	경기도 군포시 대야로 8, 305호 (대성프라자)
8	강원영서센터	21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7-1, 3층
9	충남북부센터	22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55, 2층 (화일빌딩)
10	충북청주센터	23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86번길 21, 2층
11	광주서부센터	31	광주시 남구 월산로 154, 2층
12	전남동부센터	32	전남 순천시 충효로 131-21, 301호
13	전북서부센터	33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4	대구서부센터	41	대구시 서구 평리로 438, 4층
15	경북동부센터	42	경북 포항시 북구 용당로 70-1
16	부산중부센터	51	부산 동구 조방로 17, 4층
17	경남창원센터	52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83번길 6 (도계동), 201호

※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역 및 소재지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에 따라 상담을 원하실 경우 사전에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정보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

04

건설근로자공제회 연락처

04
02

구분	주소	연락처
공제회 본회	(045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국제빌딩 (퇴직공제금업무는 8층 서울지사)	대표번호 : 1666-1122 팩스번호 : 02-547-5718
서울지사	(04522)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	전화번호 : 1666-1122 ARS 연결 후 311 팩스번호 : 0505-182-8371
구로센터	(08320)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로 11, 2층	전화번호 : 1666-1122 ARS 연결 후 315 팩스번호 : 0505-182-8380
원주센터	(26337)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2, 2층	전화번호 : 1666-1122 ARS 연결 후 343 팩스번호 : 0505-182-8379
경인지사	(1627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05, 2층	전화번호 : 1666-1122 ARS 연결 후 313 팩스번호 : 0505-182-8373
인천센터	(21544)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13층	전화번호 : 1666-1122 ARS 연결 후 312 팩스번호 : 0505-182-8372
의정부센터	(11650)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62, 7층	전화번호 : 1666-1122 ARS 연결 후 314 팩스번호 : 0505-182-8382
대전지사	(34873)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786, 13층 1302호	전화번호 : 1666-1122 ARS 연결 후 341 팩스번호 : 0505-182-8377
청주센터	(28399)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6층	전화번호 : 1666-1122 ARS 연결 후 342 팩스번호 : 0505-182-8370
부산지사	(48821)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2, 5층	전화번호 : 1666-1122 ARS 연결 후 321 팩스번호 : 0505-182-8374
창원센터	(51430)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7, 2층	전화번호 : 1666-1122 ARS 연결 후 323 팩스번호 : 0505-182-8383
대구지사	(4201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제보상로 860, 5층	전화번호 : 1666-1122 ARS 연결 후 322 팩스번호 : 0505-182-8375
안동센터	(36664) 안동시 경북대로 367, 1층	전화번호 : 1666-1122 ARS 연결 후 324 팩스번호 : 0505-182-8324
광주지사	(61932)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 5층	전화번호 : 1666-1122 ARS 연결 후 331 팩스번호 : 0505-182-8376
전주센터	(5498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2층	전화번호 : 1666-1122 ARS 연결 후 332 팩스번호 : 0505-182-8378
제주센터	(6319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18, 4층	전화번호 : 1666-1122 ARS 연결 후 333 팩스번호 : 0505-182-8384

건설근로자 고용·복지서비스 길라잡이

- 발행인 : 권영순
 - 발행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기획관리팀
 - 발행일 : 2017
-

※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발행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고용·복지서비스 길라잡이

2017